



창조경제의  
씨앗

# 연구소기업

연구소기업 설립 |  
GUIDEBOOK >





창조경제의  
씨앗

# 연구소기업

연구소기업 설립 |  
GUIDEBOOK >



## 기업 CEO

지속가능한 미래를 고민하는 CEO들에게 가장 큰 고민거리는 무엇일까. 올해 초 전경련 조사에 따르면 기업 대표와 임원들이 경영활동에서 느끼는 가장 큰 고민은 '신사업 동력 발굴'로 전체 1위를 차지했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연구소기업'은 기업의 생존과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찾는 경영자들에게 강력한 영감의 원천이 될 것이다. 투자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준비된 기술'이기에 더욱 그렇다. 기업이 보유한 경영자원과 공공연구기관의 기술력, 여기에 정부지원기관의 다양한 물적·제도적 지원이 더해지는 연구소기업은 성공적인 신사업 발굴의 보증수표가 될 수 있다.

특히, 연구소기업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쿼텀 점프를 원하는 중견·중소기업이 더욱 주목해야 할 아이템이다. 소위 중소기업 디스카운트(discount) 현상을 극복하는데 연구소기업이라는 신뢰감 있는 브랜드가 주는 유무형의 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 준비된 기술로 여는 신성장 동력



연구소기업  
개요

설립운영  
절차

관련 법규

각종 지원책

## 공공 연구기관

연구소기업은 공공연구기관이 기술을 직접 출자하고 지분을 통해 회사의 설립과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형태이다. 공공연구기관<sup>1</sup>이 단순한 기술공급자 licensor 에 머물 때와 책임 있는 주주 stockholder로 참여할 때, 어느 쪽의 기술사업화 성공률이 높아질지는 명확하다.

연구소기업의 성공을 통해 공공연구기관이 취할 수 있는 유무형의 이익은 무궁무진하다. 연구소기업은 ‘공공연구기관의 역할 변화’라는 시대적 요청에 대해 가장 적극적으로 화답할 수 있는 수단이다. 핵심원천기술의 연구개발뿐만 아니라 벤처 생태계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까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공공연구기관 본연의 모습을 대내외에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인 것이다. 현실적인 이익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자본납입금 대비 522배의 주식가치로 성장한 연구소기업 콜마비앤에이치의 성공사례를 보자. 기술자산을 활용해 발생하는 수익은 연구환경 개선을 위해 자체 재원이 필요한 공공연구기관과 기업가 정신을 가진 연구자 모두에게 현실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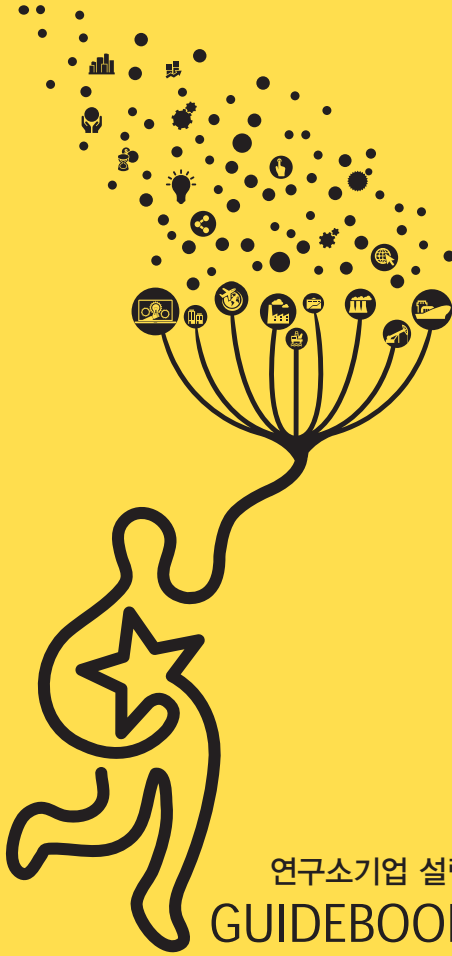


# Licensor에서 Stockholder로

### 1 공공연구기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국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관련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연구소기업에 주목하는 공공연구기관들과 기업 CEO, 예비창업자들을 위해 이 책은 연구소기업의 개요, 설립운영 절차, 관련 법규, 각종 지원책 등 연구소기업의 A to Z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연구소기업 설립 | GUIDEBOOK

---

### 일러두기

이 책은 연구소기업의 설립주체인 공공연구기관과 기업 CEO, 예비창업자들을 위해 연구소기업의 개요와 설립운영 절차, 관련 법규, 각종 지원책 등 연구소기업의 A to Z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가이드북 형태로 제작되었습니다.

---



# CONTENTS

## 04 머리말

## 08 Preview

숫자로 먼저 보는 연구소기업

## 14 제1장 연구소기업의 개요

제1절 연구소기업의 이해

제2절 설립·운영 시의 기대효과

## 30 제2장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지원

제1절 설립유형

제2절 연구소기업 제도의 이해

제3절 설립절차

제4절 지원사업

## 62 부록

[ Q&A 특 ] 연구소기업 만들기

설립기관별 연구소기업

연구소기업 관련 주요 규정

기술이전 VS 기술라이센싱 비교

# 숫자로보는 연구소기업

연구소기업 설립 가이드북





1

우리나라의  
연구소기업

113개



2  
2006년

2015년 6월  
기준

1,000  
2020년

2

연구소기업  
투자 수익률

522배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출자한 제1호 연구소기업 콜마비앤 에이치는 현재 약 1975억원의 주식 가치로 최초 자본납입금 (3억 7800만원) 대비 522배로 성장했다.



1호 연구소기업

3

연구소기업  
총 매출액

2,365억

2014년말 기준



284

2009년

4

연구소기업  
고용률

850명

2014년



237

2009년



# 5 연구소기업 설립유형

# 3



## 세제혜택

소득세·법인세 50%~100% 감면  
(최초 소득 발생 후 5년 간)

# 6 연구소기업 설립절차

# 4



# 연구개발특구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하여  
과학기술성과가 비즈니스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가경제의 성장거점이 되겠습니다.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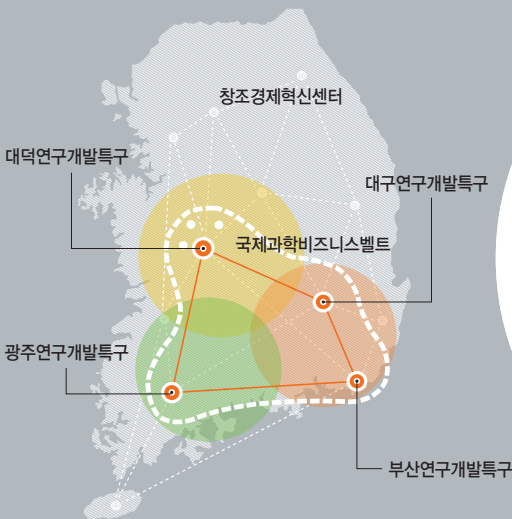
기초과학연구원, 한국형 중이온가속기 등을 활용한 기초 연구성과는 특구 내 인프라를 통해 응용, 개발 및 사업화로 연계됩니다. 과학과 비즈니스의 융합을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에너지로 탈바꿈 할 것입니다.

##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

대전 대구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될 창조경제 혁신센터와 연계하여 지역 인재의 창의적 아이디어 창업 및 사업화를 지원하고, 지역특화 전략 산업 분야의 중소, 중견기업 성장 및 글로벌 진출,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 Making the Future

과학기술의 희망! 성공 비즈니스의 시작!



출처: 2013년도 연구개발특구 통계조사 보고서

# 연구소기업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집중 육성합니다.



## 기관개요

### 설립목적

연구개발특구  
육성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 추진

### 설립근거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 2005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  
특구지원본부 설립 및 특구육성사업 본격 추진  
제1차 연구개발특구 육성종합계획 수립 및 고시 (2006-2010)
- 2011 제2차 연구개발특구육성종합계획 수립 및 고시 (2011-2015)  
광주, 대구연구개발특구 추가 지정
- 201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 시행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범  
부산연구개발특구 추가 지정

## + 공공연구성과의 사업화를 지원합니다.

- 우수기술을 발굴하여 기업에 이전시키고 사업화를 위한 추가 R&BD 지원
- 특구 내 기술창업과 기술사업화 서비스 지원을 통한 기업의 성장 지원
  - 기술금융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창업 생태계 조성

## + 혁신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인프라를 지원합니다.

- 연구소기업, 첨단기술기업 지정 제도를 통한 각종 혜택 부여
- 특구 내 입주승인 등 관리 및 개발 업무 수행

## + 특구의 글로벌 진출 지원 및 기술사업화를 추진합니다.

- 연구개발특구의 성공모델을 전 세계에 전파하여 과학한류에 기여
-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한 해외투자유치 지원

국내 우수두뇌가 모여  
대한민국을 과학기술  
강국의 반열에 올려놓았고  
연구기관과 기업이 협력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합니다.

# 제1장



# 연구소기업 설립 가이드북

# 연구소기업의 개요

연구소기업은 공공연구기관 및 기술지주회사 등이 보유한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개발특구 안에 설립되는 기업으로 국가연구개발성과(공공기술)의 기술사업화 경로를 다양화하는 동시에 보다 적극적인 사업화 활동의 기술사업화 활동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다.

연구소기업의 설립요건은 ① 연구개발특구 안에 설립되어야 하며 ② 공공연구기관이 기술출자 등의 방법을 통해 연구소기업 주식(지분 포함)의 20%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연구소기업은 Clarysse et al.(2005), Klofsten and Jones-Evans(2000) 등이 정의한 것과 같은 연구기반 스피노프(research-based spin-offs)의 범주에 포함되지만 기술사업화 과정에서 일반적인 연구기반 스피노프와는 구별되는 특징을 가지게 된다.

# 제1절 연구소기업의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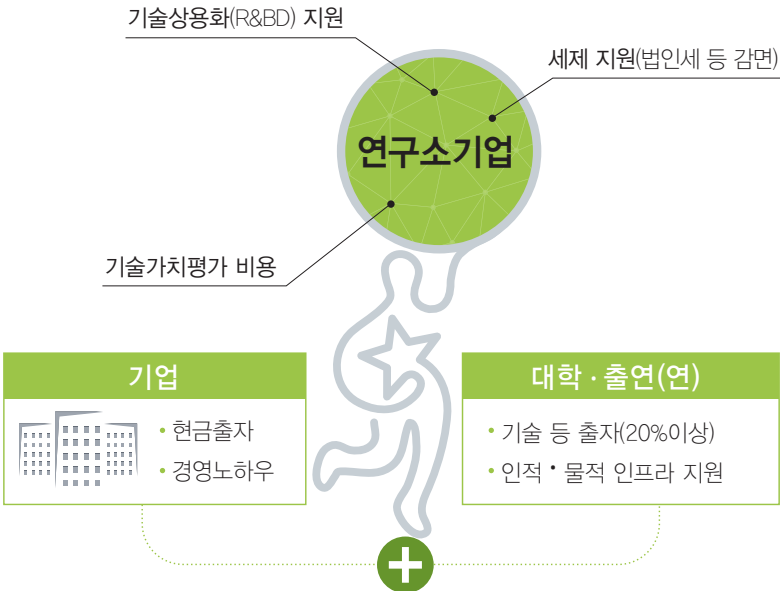
## 1.1 도입 배경

### 연구소기업은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하여 특구 안에 설립된 기업으로 연구소기업을 설립할 수 있는 기관이나 회사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연구소기업의 자본금 가운데 20% 이상의 해당 연구소기업 주식(지분 포함)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을 말한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6, 제9조의3, 시행령 제13조





## 세부적인 설립·운영 방법에 앞서 먼저 이 제도의 탄생 배경부터 알아보자.

연구소기업 제도가 도입된 이유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01. 첫째,** 공공연구기관 보유 기술의 사업화 경로를 다양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많은 장려책에도 불구하고 공공연구기관의 기술 사업화 성과가 부진한 이유로 자주 거론된 것이 '기술라이선스 중심의 획일적인 기술사업화 방식'이었다. 이 같은 지적에 따라 기존 기술라이선스 및 연구원 창업 방식 이외에, 보다 적극적인 형태로, "공공연구기관이 직접 기업 설립과 운영에 참여하는 방안"이 검토되었고, 2005년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며 연구소기업 제도가 본격 시행되기 시작했다.

**02. 둘째,** 사회 각 분야에서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이 확산되며 공공연구기관 역시 적극적인 역할 변화가 필요해졌다. 전통적인 지식 창출·공급자 역할뿐만 아니라 우수한 기술자산을 활용한 벤처생태계 활성화로 정체기에 접어든 국가산업구조 혁신의 새로운 수혈처가 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또한 벤처 버블 논란이 일었던 2004년을 기점으로 대학교수와 연구원들의 창업이 급감함에 따라 공공연구기관이 직접 연구소기업을 설립해 보유기술을 사업화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급격히 부상했다.

▶ 교수·연구원 창업은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2004년 전체 벤처기업의 39.5%를 차지할 정도로 활성화 되었다. 2004년을 정점으로 위축된 교수·연구원 창업활동은 2011년 8.55%까지 감소하였다 (STEPI, 2012).

**03. 셋째,** 공공과 민간 영역의 결합이 만들어내는 시너지 효과다. 공공연구기관은 연구개발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기업은 다양한 경영자원과 경험이 강점이다. 이 같은 서로의 '보완자산'을 하나로 합하면 기술사업화의 성공을 담보할 수 있다는 데 산·학·연 그리고 정부 모두의 판단이 일치했다. 이는 연구소기업이 일반적인 연구기반 스피노프와 구별되는 가장 큰 차이점이기도 하다.

## 제1절 연구소기업의 개요

### 1.2 해외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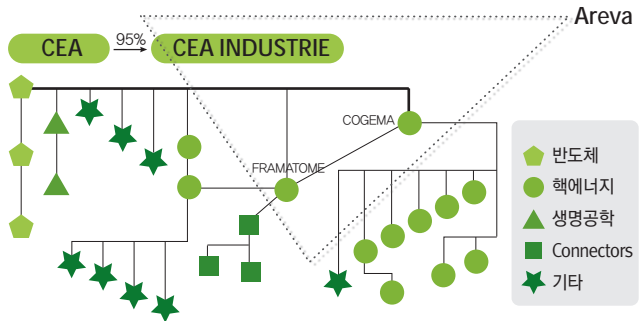
대학·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자산의 사업화에 주력하는 것은 해외 선진국들도 마찬가지다. 프랑스와 덴마크, 스웨덴 그리고 G2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들 나라들은 특히 국가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사업화를 장려하고 있는 모습이 두드러지고 있다.



전통적인 과학기술 강국 **프랑스**는 1982년부터 일찌감치 공공연구기관의 기업 설립과 경영 참여를 제도화했다.<sup>1</sup> 이에 따라 INRIA (국립정보기술·자동화연구소), CEA(프랑스 원자력 에너지 연구소) 등의 공공연구기관은 보유 기술의 직접 사업화를 위해 많은 자회사를 설립했다. 공공연구기관이 직간접으로 경영에 관여하는 포트폴리오 기업의 증가에 이들 기업에 대한 효과적인 투자와 성과 관리, 새로운 기업 설립 촉진을 전문화된 사업화 관리회사(기술지주회사에 해당) 설립으로도 이어진다. CEA가 설립한 CEA Industries(1995)와 INRIA의 INRIA-Transfert(1998)가 대표적이다.

#### CEA Industries의 구조

CEA가 소유하고 있는 기업(주식)의 효과적인 출자 및 성과관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관리형 기술지주회사인 CEA Industries를 95년에 설립하였으며, 2001년 9월에 CEA 자회사들을 에너지 관련 기업 중심으로 재편하면서 CEA Industries 등 4개 자회사가 Areva로 통합되었다.





북유럽의 강소국 **덴마크**는 2004년 관련법을 제정해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촉진 및 기업설립과 기존기업 투자를 독려하기 시작했다.<sup>2</sup> 동시에 덴마크 정부는 투자(자본금 출자) 규모와 사업 분야에 대한 명확한 원칙을 제시했다. 공공연구기관이 기업을 설립하거나 기업설립에 참여하는 경우에 공공연구기관이 가지고 있는 공공의무(public duty)와 충돌이 일어나서는 안 되며, 기업설립의 투자액이나 소유한 주식의 가치가 기관 전체 연구개발비의 3% 또는 약 75만 달러(500만 크로네)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 등이다. 이는 공공연구기관이 자회사 설립 등을 통해 기술사업화에 참여할 때 기대되는 긍정적 효과를 현실화하는 한편 일각에서 제기되는 공공성 약화 우려를 제어하기 위해서다.



국가경쟁력과 이노베이션 지표에서 줄곧 세계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스웨덴**은 대학을 중심으로 한 기술사업화 정책이 특징이다. 당초 스웨덴의 대학은 정부의 영향력 아래 공공 부문의 하나로서 관리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기업을 직접 설립하는 등의 활동에 제약이 많았다. 또한, 신기술 기반의 창업을 지원할 구조와 인센티브가 상대적으로 약했다. 이로 인해 대학 중심의 국가연구개발 구조에도 불구하고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대학 보유 기술 기반의 창업 활동 비중이 낮았다. 하지만 스웨덴 정부 역시 창업을 통한 경제구조 혁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1994년부터 대학의 기술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하였다. 이에 따라 고덴부르그(예테보리) 대학이 GU Holding, 옴살라 대학이 UUAB(Uppsala universitets Utveckling AB)<sup>3</sup>를 세우는 등 1994~95년 사이에 11개 대학에서 기술지주회사가 설립되면서 대학이 지분을 보유한 기술사업화 기업들이 다수 생겨나게 된다.

1 「The Research Orientation and Planning Law」

2 Act on Technology Transfer, etc. at Public Research Institutions

3 GU Holding은 기업 설립, 자본 투자, 지분 관리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설립 후 현재까지 포트폴리오로 관리하는 기업은 48개사이다. UUAB은 75개 이상의 기업 설립에 참여하였다.

## 제1절 연구소기업의 이해



떠오르는 강대국 **중국**은 개혁·개방 과정에서 시장경제를 성공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공공연구 부문의 창업을 활용하였다. 즉,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이 직접 투자로 회사를 설립해 연구실의 아이디어와 기술을 제품화하는 전략이다. 이렇게 설립된 학교기업(샤오반 校辦)과 연구소기업(연반 研辦)중 상당수가 주식회사 형태의 거대 기업집단으로 발전했다. 특히 이들 학교기업과 연구소기업은 중국의 개혁·개방 초기 거대한 시장에 비해 제품과 서비스 공급자가 부족했던 상황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선도자로서의 기회와 이익을 십분 누릴 수 있었다. 중국 정부는 목표대로 시장경제 도입에 성공한 후 2001년부터 이들 샤오반과 연반의 경영을 분리하는 개혁 사업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기업집단을 관리할 지주회사가 설립돼 회계, 관리, 투자, 인사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해갔다.

### 1.3 국내 유사제도

이미 우리나라에도 연구소기업과 유사한 제도로



이들 유사 제도들은 공공연구기관이 기술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기업을 설립하거나 자회사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소기업과 동일한 목표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설립(등록·인가) 요건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있다. 연구소기업은 “연구개발특구 내에 설립”조건과 함께 고유한 “세제혜택 등의 강력한 지원정책”등 설립(등록·인가) 및 육성정책 측면에서 기존 제도와 확연하게 구분된다.

## 연구소기업과 국내 유사 제도

| 근거규정                     |                           | 제도시행   | 정의   | 설립 주체  | 설립(등록인가)요건   |
|--------------------------|---------------------------|--------|--|--|--|
| 연구소 기업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 '05. 7 |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하여 특구 안에 설립된 기업  | 공공연구기관<br>(국립연구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고등교육법 2조에 따른 학교, 국방과학연구소, 전문생산기술연구소)<br>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br>공공연구기관이 5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신기술창업전문회사<br>공공연구기관<br>첨단기술지주회사 | 특구 안에 설립<br>설립 주체가 20% 이상의 연구소기업 주식(지분 포함) 보유  |
| 신기술 창업 전문회사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07. 8 |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사업화 이을 통한 창업 촉진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   | 대학(산학협력단 포함)<br>국공립연구기관<br>정부출연연구기관<br>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과학이나 산업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 주식회사<br>설립주체가 전문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상 보유   |
| 산학연협력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08. 2 | <b>&lt;기술지주회사&gt;</b><br>산학협력단 또는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지분포함)의 소유를 통하여 그 회사를 지배하는 회사<br><b>&lt;자회사&gt;</b><br>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기술을 기반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기술지주회사가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                        | 산학협력단<br>학교법인<br>(산학협력단이 없는 경우)<br>연구기관<br>(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 <b>&lt;기술지주회사&gt;</b><br>▪ 주식회사<br>▪ 설립주체가 기술지주회사 자본금의 30%를 초과하여 기술을 현물출자하고, 발행 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여 보유<br>▪ 상근 전문인력이 1명 이상<br>▪ 전용공간 확보<br><b>&lt;자회사&gt;</b><br>▪ 기술지주회사는 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의 20 이상 보유 |
| 공공연구 기관 첨단기술 지주회사 및 출자회사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 '10. 7 | <b>&lt;기술지주회사&gt;</b>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지분 포함)의 소유를 통하여 해당 회사의 사업을 지배하거나 관리·지원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br><b>&lt;출자회사&gt;</b> 기술지주회사가 보유한 기술을 활용하여 직접 설립하거나 제3의 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인수하여 편입한 회사 | 공공연구기관<br>(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고등교육법 2조에 따른 학교 등)  | <b>&lt;기술지주회사&gt;</b><br>▪ 주식회사<br>▪ 보유기술이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 기술 또는 「산업발전법」에 따른 첨단기술에 해당할 것<br>▪ 공공연구기관이 기술지주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여 보유<br><b>&lt;출자회사&gt;</b><br>▪ 기술지주회사는 2년 동안 출자회사 주식의 20% 이상 보유  |

# 제2절 연구소기업 설립·운영의 기대효과

## 2.1 공공연구기관

공공연구기관은 기술공급자licensor일 때보다 연구소기업의 주주stockholder로서 더 적극적으로 기술사업화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다양한 유·무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동시에 연구소기업의 기술사업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위험을 효과적으로 통제·관리하기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공공연구기관이 연구소기업을 통해 취할 수 있는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 01. 하나, 가시적인 창조경제 기여도

먼저 공공연구기관은 ▲기술사업화 경로를 다양화하고 ▲적극적으로 기술사업화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공공연구기관의 역할 변화(academic entrepreneurship)를 능동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 또한 ▲공공연구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특히 '벤처생태계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공공연구기관'의 새로운 존재가치를 대내외에 증명하게 된다.

연구소기업의 경제발전 기여도는 이미 수치상으로도 검증이 되고 있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연구소기업은 2014년 총 매출액 2365억 원, 고용인원 850명으로 모든 실적지표가 매년 빠르게 증가세를 기록 중이다.

### 연구소기업 매출액 및 고용 성과

(단위 : 억원, 명)

| 구 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
| 설립수 | 19    | 22    | 29    | 38    | 46    | 89    |
| 매출액 | 284   | 430   | 725   | 1,208 | 1,644 | 2,365 |
| 고 용 | 237   | 272   | 310   | 524   | 639   | 85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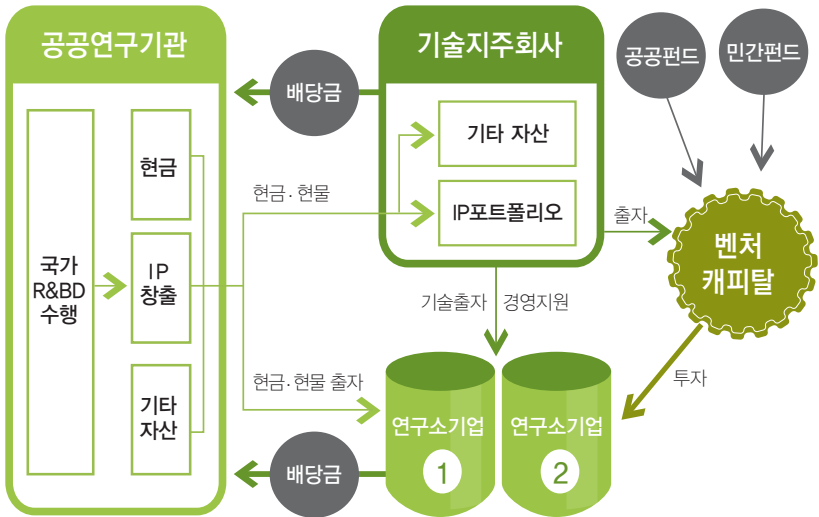
## 02. 둘, 부문별 장점을 극대화

다음으로 ▲공공연구기관이 기술개발 과정에서 축적한 암묵지(tacit knowledge)를 보다 쉽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술사업화 측면에서 효율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  
또한 ▲기업과 협력해 연구소기업을 설립하거나 기술출자로 기존기업을 연구소기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민간이 축적해온 경영자원을 활용할 수 있어 사업화의 불확실성과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

## 03. 셋, 기관-기업의 긴밀한 협조

기술출자를 매개로 공공연구기관-연구소기업 또는 공공연구기관-출자기업 간에 매우 긴밀하고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Bray and Lee(2000) 등의 여러 연구에서는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공공연구기관과 기술사업화 기업이 매우 밀접한 협조관계를 형성하게 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 연구소기업의 개념도



## 04. 넷, 현실적인 자원 마련 통로

가까운 미래에 큰 수익이 기대된다. 연구소기업은 일반적인 기술라이센스 방식에 비해 보다 큰 미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유용한 통로가 될 수 있다. 출자로 발생한 배당금과 수익금 등이 연구소기업을 설립·운영하는 공공연구기관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다. 하지만 보유하고 있는 기술자산을 활용해 창출하는 수익은 연구 환경 개선 등 기관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공공연구기관의 현실적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 코스닥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한 제1호 연구소기업 콜마비엔에이치의 경우,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보유한 주식 가치는 자본납입금(3억 7800만원) 대비 522배에 달하는 약 1,975억(2015년 6월 15일 종가 기준)로 경중 뛰었다.

## 05. 다섯, 연구원 펄떡이게 할 ‘기업가정신’

연구소기업의 설립·운영은 공공연구기관에서 기업가정신을 확장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연구소기업 설립·운영의 효과를 실증 분석한 한 연구<sup>1</sup>에 따르면, 연구소기업 설립 여부와 설립 건수는 연구자의 창업의지로 표출되는 기업가정신의 확산과 강화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매출액, 고용창출, 연구개발 투자 등과 같은 경제적인 효과와 더불어 기업가정신의 확산과 강화 역시 연구소기업 설립·운영의 중요한 효과로 볼 수 있다.

### 기술사업화 방법으로써 연구자 창업에 대한 선호도 차이

| 구분        | 평균    | 표준편차  | t      | 가중치를 반영한 평균<br>(Wgt. Mean) |
|-----------|-------|-------|--------|----------------------------|
| 연구소기업 보유  | 0.477 | 0.501 | 3.527* | 0.634                      |
| 연구소기업 미보유 | 0.186 | 0.393 |        | 0.186                      |

1 이성생(2014). 연구자의 창업의지를 중심으로 살펴본 연구소기업 설립·운영의 효과, 벤처창업연구 제9권 제1호



## 2.2 공동출자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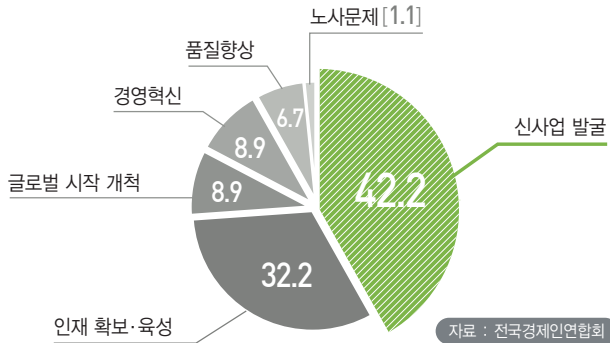
연구소기업 중 ‘합작투자형’과 ‘기존기업 기술출자형’은 기업이 현금 또는 현물 출자로 연구소기업 설립과 운영에 참여하는 형태다. 전체 연구소기업의 71%가 이 유형에 해당된다. 올해는 특히 연구소기업의 재도약 원년이라 할 수 있을 만큼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각별하다. 물 들어 왔을 때 배를 띄우려면 빠른 판단과 행동이 필요하다. 기존 기업이 연구소기업 설립으로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 01. 하나, 준비된 성장모멘텀

신사업 발굴과 신규 시장 진출의 기회로 연구소기업을 활용할 수 있다. 규모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기업들은 자사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데 관심이 매우 높다. 2015년 전경련 국제경영원이 기업 CEO 9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경영활동에서 가장 큰 고민이 ‘신사업 동력 발굴’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2.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기업 임원의 가장 큰 고민

(단위:%)



## 제2절 연구소기업 설립운영의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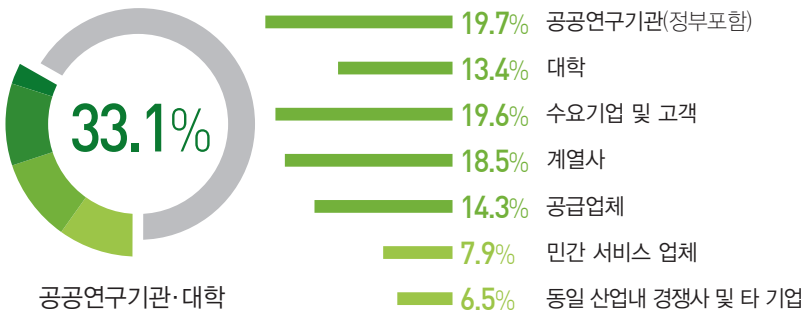
이 결과는 신사업 발굴이 기업의 생존과 경쟁력을 좌우할 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한편으로 신사업 동력 발굴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한다.

실제로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의 기술혁신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제조업체의 12.2%가 지난 3년 간 신사업 발굴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중 50%의 기업이“성과가 없었다”고 응답하였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기업이 연구소기업 설립·운영에 참여하게 되면 자사가 보유한 다양한 경영자원에 공공연구기관의 전문성과 연구개발 능력이라는 날개를 하나 더 다는 셈이다. 따라서 신사업 발굴과 신규 시장 진출의 기회로 연구소기업 제도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 02. 둘, 준비된 기술, 준비된 파트너

기존 제품 품질향상과 라인업 다양화의 파트너로 공공연구기관을 활용할 수 있다. STEPI의 조사<sup>1</sup>에서도 국내 제조기업의 혁신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협력파트너는 공공연구기관(40.7%)이었고, 가장 유용한 파트너 역시 공공연구기관(19.7%)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술출자를 매개로 기업은 공공연구기관과 긴밀하고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 가장 유용했던 협력 파트너



### 03. 셋, 공신력 있는 브랜드

연구소기업이라는 브랜드는 소비자(시장)에게 우수한 기술역량, 신뢰감 등과 같은 긍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다. 특히 중소기업은 낮은 인지도로 인해 손해를 보거나 제품의 제 값을 받지 못하는 소위 중소기업 디스카운트(discount) 현상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브랜드의 반복적 노출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경우에 연구소기업이라는 브랜드로 얻을 수 있는 유무형의 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기대된다.

### 04. 넷, 각종 지원책 “물 들어왔을 때 배 띄워야”

넷째, 정부 및 지원기관으로부터 다양한 제도적·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명시된 연구소기업 지원은 사업화 추진에 필요한 ▲인력·설비·비용 등의 지원, ▲연구소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으로 근무하기 위한 연구원의 휴직 및 겸직 허용, ▲최초 소득 발생 과세 연도로부터 5년 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 50%~100% 감면 등이다.

특히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정책적으로 사업화개발 자금지원 등 연구소기업만을 위한 지원사업을 별도로 시행 중에 있다.

1 하태정·강희중·손창수·김민재, 「2012년도 한국의 기술혁신조사: 제조업 및 서비스업 부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2)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콜마

# Win-Win Case Study

## 제1호 연구소기업

# 콜마비엔에이치(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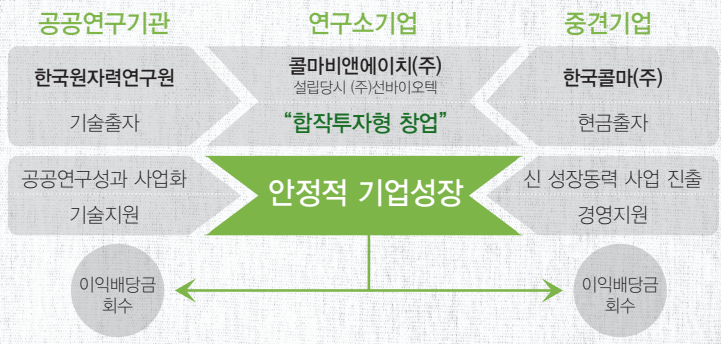


### 기업현황

2015 연구소기업 최초로 코스닥 상장

|         |   |
|---------|---|
| 설립자본금   | 10억원 [2006년 3월 설립]  |
| 시 가 총 액 | 1조 2,012억원 [2015년 6월 15일 총가 기준(한국거래소 참조)]                                 |
| 고 용 인 원 | 34명 <sup>(12)</sup> → 135명 <sup>(14)</sup>                                |
| 매 출 액   | 856억원 <sup>(12)</sup> → 1,115억원 <sup>(13)</sup> → 1,839억원 <sup>(14)</sup> |

### 성공사례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지원효과

2015년 2월

**코스닥 상장**

- 설립지원** / 기술가치평가 0.2억원 지원
- 육성지원** / R&BD자금 11.5억원 지원
- 법인세감면** / 법인세감면 14억원 (12년말 누적)
- 매출, 고용** / 연평균 98% 성장 (14년 매출 약1,730억원, 고용 120명)



**한국원자력연구원**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 공공연구기관(한국원자력연구원)의 성공

원자력연구원은 기술출자로 콜마비앤에이치(구 선바이오텍) 설립에 참여해 연구소기업의 성공 시대를 열었다. 당시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현물출자가 불가능하던 때. 원자력연구와 한국 콜마는 오랜 논의 끝에 ‘기술출자’라는 새로운 답안을 찾아냈는데 이는 대개 일회성에 그쳤던 기술이전의 한계를 극복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됐다.

보유기술의 현물출자 방식으로 38%의 지분을 보유하게 된 원자력연구는 적극적인 기술 업그레이드를 통해 사업화에 적극 참여하였고, 연구실에 갇혔던 우수기술은 자본·유통망·

제조기술·마케팅 등 민간기업의 인프라와 결합하며 ‘포텐’이 터졌다. 콜마비앤에이치의 상장으로 원자력연구이 보유한 주식가치는 최초납입금 대비 522배 증가했다. 기관 차원의 든든한 자원 마련뿐만 아니라 핵심기술 개발에 참여한 연구진 역시 막대한 기술료 수혜가 기대된다. 하지만 원자력연구이 거둔 가장 큰 성과라면 역시 출연연구이 주도하는 창조경제의 새로운 성공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공공기술의 국민경제 기여’라는 시대적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공공연구기관의 존재가치를 대내외에 증명한 것이다.



## 공동출자기업(한국콜마)의 성공

신성장동력을 찾던 화장품 기업 한국콜마는 원자력연구와 공동개발 중이던 방사선 이용 고순도 정제기술을 자사의 제조 인프라와 결합하면 항암치료 보조식품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특히 막 생겨난 연구소기업 제도는 기술 사업화의 비옥한 토양이 됐다. 미완성 상품인 기술이 제품화되기 위해서는 기술공급자와 수요자 간 끊임없는 조율과 커뮤니케이션이 꼭 필요하다. 이전의 기술이전과 달리 연구소기업 제도는 사업화 과정에서 이 둘을 파트너로 단단히 결속시켜 상용화 성공률을 크게 높이는 효과가 있었다.

연구소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 역시 초기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 면에서 큰 도움이 된다. 콜마비앤에이치는 설립 후 3년간 소득세와 법인세 100%, 이후 2년간은 50%의 감면 혜택을 받았다. ‘연구소기업’이라는 브랜드 효과는 대표 상품 ‘헤모함’이 국내 최초로 식약처의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승인을 받기까지 큰 힘이 됐다. 또한 연구소기업 최초로 코스닥에 상장하는 과정에서 상장심사와 주가형성에도 크게 작용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콜마비앤에이치의 2015년 추정 매출액은 전년 대비 32%가 오른 2297억 원. 지주회사인 한국콜마홀딩스의 주가 역시 함께 상승 중이다.

# 제 2 장



연구소기업 설립 가이드북

#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지원

# 제1절 연구소기업 설립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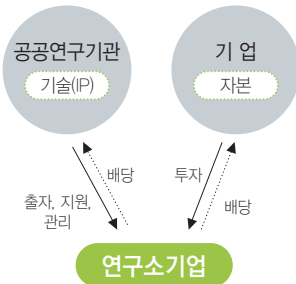
## 1.1 설립 유형

연구소기업의 유형은,

### 1

#### 합작투자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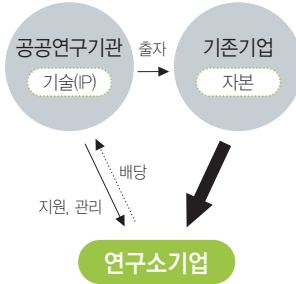
공공연구기관과 기존 기업이 기술과 현금 등을 공동출자해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는 형태



### 2

#### 기존기업 기술 출자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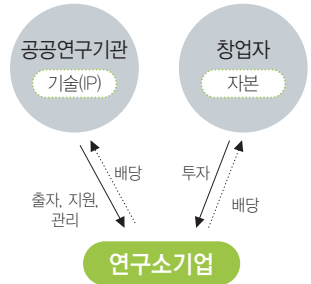
공공연구기관이 기존 기업에 기술 등을 현물출자해 해당 기업을 연구소기업으로 전환하는 형태



### 3

#### 신규창업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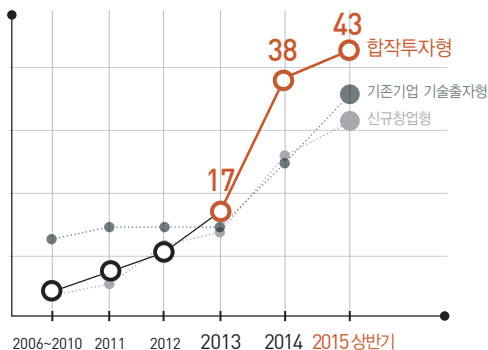
공공연구기관과 기존 기업이 기술과 현금 등을 공동출자해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는 형태



→ 2015년 상반기('15년 6월말 기준) 현재 설립된 113개 연구소기업을 형태에 따라 구분하면 합작투자형이 45개(39.8%)로 가장 많고, 기존기업 기술출자형 35개(31.0%), 신규창업형 33개(29.2%) 순이다.



등록 연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연구소기업 제도가 도입된 초기에는 공공연구기관이 기존 기업에 기술 등을 현물출자해 해당 기업을 연구소기업으로 전환하는 형태(기존기업 기술출자형)가 가장 많았다. 그러나 2013년 이후에는 공공연구기관과 기업이 공동출자해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는 합작투자형이 크게 증가해 현재는 합작투자형 연구소기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1.2 설립 유형별 특성

### 1) 합작투자형

-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 역량과 기업이 보유한 경영자원의 결합을 통해 기술사업화 추진 과정에서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 창출 가능
-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신사업 발굴, 신규 시장 진출의 기회로 활용 가능

### 2) 기존기업 기술 출자형

- 공공연구기관이 출자하는 기술이 연구소기업으로 전환되는 기존기업의 사업영역과 유사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술사업화 추진이 용이
- 연구소기업 전환 시 시가총액이 큰 기업은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하여야 하는 지분율 기준을 충족하기가 어려울 수 있음

### 3) 신규창업형

- 연구소기업의 대표 또는 경영진이 기술에 대한 이해도나 지식이 매우 높다는 장점
- 판로개척, 마케팅, 인사관리, 투자유치 등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원과 경험이 부족
- 빠른 시장 진입 및 초기 사업 안정화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

앞서 연구소기업이 일반적인 연구기반 스피노프(research-based spin-offs)와 구별되는 특징으로 공공연구기관의 기술 분야 전문성·연구개발 능력과 기업의 다양한 경영자원·보완자산 결합의 ‘시너지 효과’를 들었다. 이처럼 기술사업화 관점에서 본다면 신규창업형 보다 합작투자형 등이 연구소기업의 장점을 활용하는 데 보다 유리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 제1절 연구소기업 설립 유형

‘합작투자형’의 경우 연구소기업 설립에 참여하는 모기업이 일반적으로 풍부한 자본력과 양질의 경영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공공연구기관이 출자한 기술의 사업화 성공 가능성도 높아진다.

### 합작투자형

#### (주)그린모빌리티



스즈키, 혼다 등 세계 유수의 브랜드를 경쟁 상대로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과 국내 대표 이륜차 제조업체들이 손을 잡았다. DGIST는 ‘경량 전기차용 구동모터제어기 시스템’ 등의 기술을 출자하고 지엠티와 성림첨단산업이 현금을 출자했다. 친환경 전기동력을 이용한 퍼스널 모빌리티와 모터, 컨트롤러 등 순수 국내기술로 제작된 그린모빌리티의 제품들은 우수한 성능과 높은 가격 경쟁력으로 벌써부터 돌풍이 예고 되고 있다. 창업 2년 만에 한국전기차서비스와 2년간 1500대 공급을 골자로 한 양해각서가 체결된 데 이어, 60여 개국에 판매망을 보유한 KR모터스(구 S&T모터스)를 통해 해외 시장에서도 본격 판매될 예정이다. 문성훈 그린모빌리티 책임연구원은 “DGIST의 기술로 전기차의 핵심부품인 모터 컨트롤러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 중”이라면서 “연구소기업의 기술우위에 기존 기업의 판매망이 결합되니 국내 주요 수요처인 지자체와 투자자들의 관심도 덩달아 뜨거워지고 있다” 고 밝혔다.

빈공간이 많이남는곳들의 경우, 관련이미지나 스스로  
채울 예정이나, 내용을 간소화 시키는 방안도 생각해봐  
주시기바랍니다.

### 합작투자형

## 미코바이오메드

### MiCo TN



2008년 국내외 반도체 시장이 침체되면서 반도체  
부품소재 업체들에게 큰 위기가 닥쳐왔다.

반도체 부품소재 벤처기업인 미코도 설립 9년만  
에 고민에 빠졌다. 결국 바이오기반 진단시장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선택했다. 그러나 미코의  
고유기술과 접목할 수 있는 바이오기반 기술을  
발굴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그러던 중 2008년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에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  
내놓은 ‘나노캡 기반 바이오센서 기술’을 접하  
면서 미코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했다. 기술 사업화  
를 고민중이던 생명연과 자본은 있지만 새사업을  
찾지 못하던 미코의 이해가 맞아 떨어져 연구소  
기업 미코바이오메드가 탄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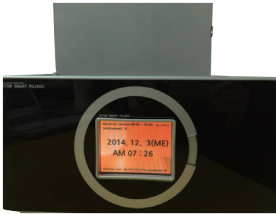
결국 미코는 연구소기업으로 변신한 지 6년만인  
지난달 미국과 이탈리아 기업 등에 복합진단기와  
헤모글로빈 측정기 등 휴대용진단기 5,700만  
달러를 수출하는 ‘잭팟’을 터뜨렸다.

## 제1절 연구소기업 설립 유형

‘기존기업 기술 출자형’ 역시 연구소기업 제도를 활용하기에 유리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공공 연구기관의 출자 기술이 기존기업의 사업영역과 유사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연구소기업 전환과 기술사업화 추진이 용이하다. 다만 이 경우 연구소기업 전환 시 시가총액이 큰 기업은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해야 하는 지분율 기준(20%)을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기존기업 기술 출자형은 협력기업의 규모가 합작투자형에 비해 작은 것이 일반적이다.

### 기존기업 기술 출자형

#### 제윤메디컬



2009년 설립된 헬스케어 솔루션 기업 제윤메디컬은 2014년 전북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회사로부터 ‘골절방지 의복’ ‘투벨트 트레드밀 이물 구비한 보행재활 훈련장치’ 등의 기술을 출자받아 연구소기업으로 새롭게 옷을 갈아입었다. 현재 전체 직원 14명 중 12명이 연구인력인 제윤메디컬에서는 하지근력이 약한 고령자와 보행이 어려운 장애 환자가 낙상으로 인한 골절을 방지하기 위한 복합 센서기술과 제품(낙상통합관리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낙상 관련 제품 외에 이 회사는 이미 스마트 약상자를 이용한 복약모니터링 솔루션(제품명스마트 필박스)을 출시해 국내외 의료시장에 공급 중이다. 나제욱 제윤메디컬 연구소장은 “기술력이 강한 R&D 중심의 기업을 만들기 위해 연구소기업을 선택한 것”이라면서 “역시 기대와 같이 연구소기업이 되면서 특히 연구개발 능력을 최대치로 확보할 수 있게 돼 차별화된 제품개발이 가능해졌다”고 평가하고 있다.

‘신규창업형’은 대부분 출자기술의 개발을 주도하였거나 개발 과정에 적극 참여한 연구자 또는 연구팀이 연구소기업의 창업자로 참여한다. 이는 연구소기업의 대표 또는 경영진이 기술에 대한 이해도나 지식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판로개척, 마케팅, 인사관리, 투자유치 등 경영지식과 경험이 부족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설립 단계에서부터 기업이 참여하는 합작투자형·기존기업 기술출자형에 비해 시장 진입과 사업 안정화에 다소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따라서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출자(이전) 받아 연구소기업을 설립하려는 연구자들이 안정적으로 창업에 나설 수 있도록 돕는 지원이 필요하다.

## 신규창업형

### 세이프텍리서치



해양과기원의 연구팀이 주축이 돼 2012년 창업한 세이프텍리서치는 연구원이 개발한 기술의 사업화에 성공하며 해외업체의 놀이터였던 시장의 지형을 확 바꿔놓은 해상교통 안전기술 분야의 선도기업이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선박운항 시뮬레이터 관련 핵심원천기술을 보유한 세이프텍리서치는 사업 첫해 6억여 원, 이듬해에 여덟 배인 46억 원의 매출고를 올리며 단박에 태풍의 눈으로 떠올랐다. 목포해양대 전기능시뮬레이터, 해군조함훈련체계, 부산신항 종합해상교통안전진단 등 국내에서 발주된 대형 시뮬레이터 시스템 구축 사업을 석권한 세이프텍리서치의 다음 목표는 3개 정도의 해외기업이 점유하고 있는 해외시장. 사용자 요구사항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기술력에 더해 모바일 및 데스크톱 수준의 소형화 제품 라인업과 음성인식기술로 국제 무대에서도 전에 없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다.

2014년 부산대학교기술지주가 기술을 출자해 설립한 효원파워텍은 ‘BLDC모터 구동 인버터회로 입력 전류의 추정장치 기술’을 사업화하는 전기전자제어 기업이다. 부산연구개발특구가 배출한 최초의 연구소기업으로 각별한 의미가 있다. 효원파워텍은 현재 각종 제어장치의 연구개발과 함께 자체 제어를 적용한 전기휠체어를 생산하며 부산 최초 연구소기업으로서 새로운 시장영역을 개척 중이다. 부산연구개발특구에는 효원파워텍을 시작으로 한 해 동안 조선·해양플랜트·전기전자·통신 분야에서 모두 9개의 연구소기업이 새로 설립됐다.



### 효원파워텍

# 제2절 연구소기업 설립·운영 관련 규정

연구소기업 제도는 2005년 1월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現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동년 7월부터 본격 시행 됐다. 2절에서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연구개발특구법)」 및 시행령, 연구소기업 등록절차 등에 관한 규정 등을 중심으로 연구소기업 설립·운영 제도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 2.1 연구소기업 설립 관련 규정

### (1) 설립 목적

연구소기업의 설립 목적은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는 것이다. 사업화의 대상인 ‘기술’에 대해서는 연구개발특구법에 별도로 정의되어 있지 않다. 이에 대해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를 적용한다면 ‘기술’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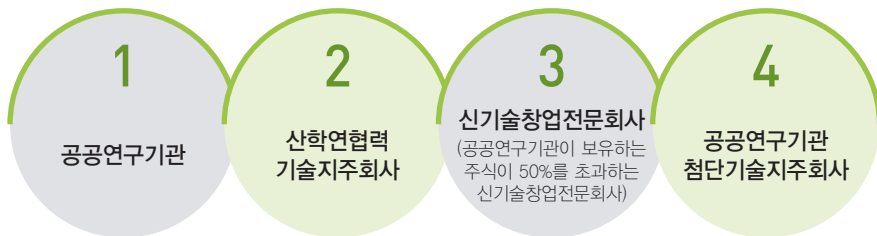
1. 특허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 또는 출원된 특허
2. 실용신안
3. 디자인
4. 반도체 집적회로의 배치설계 및 소프트웨어 등의 지식재산
5. 이들이 집적된 자본재
6. 이에 관한 정보

등이 포함된다. ‘사업화’는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생산 또는 판매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업화를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연구개발특구법은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특허, 실용신안, 소프트웨어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제품을 개발·생산 또는 판매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 기술을 향상시키는 활동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목적으로 연구소기업을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2) 설립 주체

연구소기업의 설립 주체는 크게 아래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이 네 가지 유형에 속하는 기관이나 회사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연구소기업을 설립할 수 있다. 연구소기업의 설립 주체로서 공공연구기관은 국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국방과학연구소,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2005년 연구소기업 제도가 도입되었을 때에는 연구소기업을 설립할 수 있는 기관이 ‘특구 안’의 ‘국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2009년 12월 연구개발특구법이 개정(2010년 3월 시행)되면서 특구 안의 공공연구기관 뿐만 아니라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등도 연구소기업을 설립 할 수 있게 되면서 특구 안으로 한정되었던 설립 주체의 지역적 범위가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특히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가 연구소기업을 설립할 수 있는 기관에 포함이 되면서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로서 연구소기업을 설립하거나 자회사를 연구소기업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부록 참조 : 출자기관별 연구소기업 설립 리스트)

## (3) 보유 주식 비율

연구개발특구법은 연구소기업을 설립하는 기관 또는 회사가 연구소기업의 주식(지분 포함) 중 20% 이상 보유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둘 이상의 주체가 공동으로 연구소기업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개별 기관 또는 회사가 보유한 주식을 합한 비율이 20% 이상이면 된다.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은 공공연구기관 등이 연구소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출자할 수 있는 자산·정보 또는 권리에 지식재산권 및 노하우뿐만 아니라 현금, 부동산, 연구시설 및 기자재, 그 밖에 양도 가능한 자산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4) 설립 지역

2009년 연구개발특구법이 개정되면서 설립 주체의 지역적 범위가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다만, 특구 밖의 기관이 설립하는 경우에도 연구소기업은 특구 안에 설립되어야 한다. 특구 안에 설립되어야 한다는 것은 연구소기업 설립 등기 시 본점 소재지가 연구개발특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장 또는 연구소 등의 소재지는 지역적 제한을 받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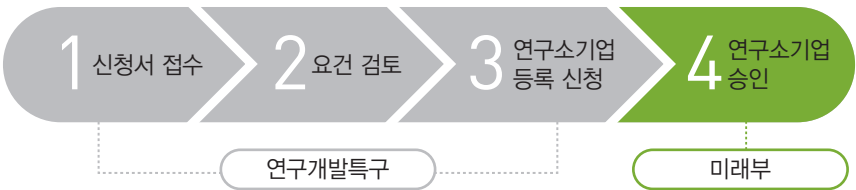
#### (5) 연구소기업 등록

연구소기업이 설립한 기관 또는 회사는 연구소기업 등록신청 절차를 거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연구소기업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1.등록신청서와 함께 2.정관 3.보유 인력 및 시설 현황에 관한 서류 4.주식 보유 비율 및 명세에 관한 서류 5.사업계획서(사업 타당성 평가 포함)를 첨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42조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연구소기업 등록 신청서의 접수 및 확인 등에 관한 업무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위탁하도록 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신청서류 등을 검토하여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 연구소기업 등록증을 진흥재단을 거쳐 설립기관에 교부하게 된다.

##### 연구소기업 설립 준비 단계



##### 연구소기업 등록 단계





## 2.2 연구소기업 운영 관련 규정

### (1) 연구원의 휴·겸직

연구개발특구법은 공무원이 아닌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이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휴직하거나 겸직으로 연구소기업 대표자 또는 임직원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휴직기간은 3년 이내가 원칙이지만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3년 더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겸직에 관해서는 기간 등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공공연구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겸직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 (2) 보유 주식 비율 변동 등 연구소기업 등록 내용 변경

연구소기업의 사업화 및 운영 자금 마련, 기타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자본금 증자(增資)가 이루어질 수 있다. 제도운영 초기에는 공공연구기관 등이 증자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보유하고 있는 연구소기업 주식 비율이 20%에 미치지 못하게 돼 연구소기업 등록이 취소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2009년 12월 연구개발특구법이 개정되면서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주식보유 비율이 5% 이상일 경우에는 등록 취소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그리고 2014년 11월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을 추가개정하여 동일 조건<sup>1</sup>에 대해 유예기간을 3년에서 최대 5년으로 연장하였다. 한편 주식 보유 비율 변동을 포함하여 연구소기업의 운영 과정에서 상호, 본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에 대한 내용이 변경되었을 때 그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연구소기업 변경등록신청서에 그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42조는 연구소기업 등록과 마찬가지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연구소기업 변경등록 신청서의 접수 및 확인 등에 관한 업무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위탁하도록 하고 있다.

1 공공연구기관 또는 기술지주회사 등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해당 연구소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비율이 20%(등록된 연구소기업이 기술개발 투자를 위하여 자본금을 증액한 경우에는 10%)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주식 보유 비율이 5% 이상일 경우에는 5년 동안 등록의 취소를 유예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 (3) 법인세 감면 등 연구소기업에 대한 지원

연구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sup>2)</sup>에 따른 법인세 등의 감면 대상이 된다.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연구소기업으로 등록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로 간주한다. 또한 감면 기간 동안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총 합계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의제3항 각 호를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합한 금액을 감면한도로 하여 세액을 감면한다.

연구소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은 국세뿐만 아니라 지방세에도 적용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대전광역시 시세감면조례(조례 제4434호, 2015년 4월 17일 개정)’에 따른 취득세 면제이다.<sup>2)</sup> 대전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제8조 제2항은 연구소기업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세액 감면 외에도 연구소기업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규정들이 연구개발 특구법 등에 제시되어 있다. 예를 들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및 건물과 그 밖의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을 국유재산법 등에도 불구하고 수익계약으로 연구소기업에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는 연구소기업이 공공기술의 사업화를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인력, 설비 및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연구소기업에 대한 지원 규정을 바탕으로 연구소기업 전략육성 사업 등 연구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들이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제2장 4절 참조)

2) 특구별 지방세 혜택 부록 \* 부록 3번 참조

#### (4) 출자로 발생한 수익금 등의 사용

연구소기업을 설립한 공공연구기관은 연구소기업에 대한 출자로 발생한 수익금과 잉여금을 연구개발 활동이나 연구소기업에 대한 재출자 등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연구소기업에 대한 재출자,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에 필요한 경비, 기술개발 및 사업화에 기여한 인력 및 부서에 대한 보상금 등의 용도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기관운영 경비로 사용할 수도 있다.

다만, 연구개발특구법에 출자로 발생한 수익금과 잉여금의 용도별 사용비율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등에 제시된 용도별 사용비율 규정을 준용하거나 공공연구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용도별 사용비율을 정할 필요가 있다.

#### 연구소기업 설립혜택

| 국세                        | 지방세                       |          |
|---------------------------|---------------------------|----------|
| 법인세                       | 재산세                       | 취득세, 등록세 |
| 3년간 100%,<br>이후 2년간 50%감면 | 7년간 100%,<br>이후 3년간 50%감면 | 면제       |

# 제3절 연구소기업 설립 절차

연구소기업 설립 절차는 설립 유형(합작투자형, 기존기업 기술출자형, 신규창업형)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다. 또한 공공연구기관이 출자기술을 발굴하여 연구소기업 설립을 추진하는 경우와 외부 기업이 공공연구기관에 연구소기업 설립을 제안하여 추진하는 경우에도 설립 절차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1.연구소기업 출자 기술 발굴 및 선정, 2.연구소기업 설립 주체 선정, 3.연구소기업 설립 기본 합의서 체결 4.출자대상 기술에 대한 가치평가, 5.사업계획서 작성 및 연구소기업 설립 계획 심의, 6.출자 완료 및 법인登記 7.연구소기업 등록 신청의 절차는 공통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 연구소기업 설립절차

| 설립 절차                       | 주요 업무   |
|-----------------------------|---|
| 1 연구소기업 출자 기술 발굴 및 선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출자 기술 발굴</li> <li>기술 출자의 타당성 검토<br/>[해당 기술의 출자 가능 여부 확인, 해당 기술의 우수성 검토, 해당 기술의 사업화 방법으로 연구소기업 설립 방식의 타당성 검토, (수요 기업이 제안하는 경우) 기술 수요 기업의 사업화 역량 검토]</li> <li>심의 및 선정</li> </ul> |
| 2 연구소기업 설립 주체 및 공동 출자자 선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단독 또는 공동 설립 여부 결정(공공연구기관, 신기술창업전문회사, 기술지주회사)</li> <li>공동 출자자(합작투자기업, 연구소기업 전환 예정 기업, 창업자) 발굴(설명회 개최 등)</li> <li>공동출자자 평가 및 선정</li> </ul>                                       |
| 3 연구소기업 설립 기본 합의서 체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설립 주체 간 기본 합의서 작성 및 체결 예비적 합의서 또는 양해각서(출자 대상 기술 선정, 설립 주체 선정 등의 과정에서 합의점에 도달한 내용)</li> </ul>   |
| 4 출자대상 기술에 대한 가치 평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술평가기관 선정</li> <li>기술평가 신청, 계약체결, 평가진행, 평가서 수령</li> <li>기술평가 비용 지원 신청</li> </ul>   |
| 5 사업계획서 작성 및 연구소기업 설립 계획 심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타당성 평가(기술평가기관)</li> <li>연구소기업 설립 계획 심의 및 확정</li> <li>연구소기업 지원을 위한 기관 내부 규정 정비</li> </ul>   |
| 6 출자 완료 및 법인登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구소기업 설립 약정 체결</li> <li>현물(기술 등) 및 현금 출자</li> <li>법인登記(설립登記, 변경登記)</li> <li>연구소기업 설립 결과 보고</li> </ul>  |
| 7 연구소기업 등록 신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등록 신청(특구진흥재단)</li> <li>등록증 발급(미래창조과학부 장관)</li> </ul>   |

## (1) 연구소기업 출자 기술 발굴 및 선정

연구소기업 설립의 첫 번째 단계는 출자 대상 기술을 발굴·평가하고 선정하는 것이다. 출자 대상 기술을 발굴·선정하는 과정은 기술이전 대상 기술을 선정하는 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

### 출자 대상 기술선정

공공연구기관이 출자 기술을 발굴하여 연구소기업 설립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방식으로 출자 기술 발굴이 이루어진다.

**첫째,** 연구개발 책임자 또는 기술개발에 참여한 연구자가 출자 대상 기술에 대한 개요, 출자 목적 및 필요성, 사업화 가능성 등이 포함된 기술 출자 계획서를 작성하고 평가·심의를 거쳐 출자 대상 기술을 선정하는 것이다. 이는 기술이전 과정에서 연구부서 또는 연구자가 기술이전 계획서를 작성하고, 기술이전 전담부서나 기술이전 심의회에서 계획서를 검토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할 수 있다. 연구부서 또는 연구자가 작성한 기술 출자 계획서는 기술이전과 마찬가지로 기술이전 전담부서나 기술이전 심의회에서 검토할 수도 있고, 별도로 운영되는 연구소기업 지원 조직(기술출자 심의회, 기술주주회사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해 출자 대상 기술을 평가, 선정할 수 있다.

**둘째,** 기술이전 전담부서나 연구소기업 지원부서 등에서 공공연구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기술 중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기술을 선별하고, 발명자 인터뷰 등을 거쳐 출자 대상 기술을 선정하는 것이다.

### 타당성 검토

연구소기업 출자 기술 발굴 및 선정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타당성 검토는 출자 대상 기술 그 자체의 우수성에 대한 검토뿐만 아니라 해당 기술의 사업화(활용) 방법으로써 연구소기업 설립이라는 방식의 타당성을 함께 검토하게 된다.

출자 대상 기술의 우수성은 기술의 특성이나 적용될 수 있는 산업 분야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항목과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무리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기술이전을 위한 기술 평가 시 많이 적용되는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할 수 있다. 출자 대상 기술의 우수성에 대한 평가는 먼저 기술성 및 시장성을 평가하여 1차 선별하고, 선별된 기술을 대상으로 사업성이 높은 기술을 최종적으로 선정하는 2단계 과정을 거칠 수 있다. 연구소기업의 목적이 기술의 직접 사업화에 있기 때문에 사업화 성공 가능성에 비중을 두어 출자 대상 기술을 선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업화 성공 가능성이 높은 기술은 공동출자 기업을 발굴하는데도 유리하며, 투자회수

### 제3절 연구소기업 설립 절차

기간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다만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기술의 특성이나 기술이 적용될 수 있는 산업 분야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공공연구기관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기술 특성에 맞는 기술 평가 방법과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

출자 기술 발굴 및 선정 단계에서는 출자 대상 기술의 우수성에 대한 검토와 함께 해당 기술의 사업화(활용) 방법으로써 연구소기업 설립이라는 방식의 타당성을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 연구소기업 설립이라는 방식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는 기술 출자에 따른 기술적 또는 사회적 파급효과, 연구소기업 설립의 기대효과를 확인한다는 의미이다.

먼저 특정 기술을 출자하였을 경우 국가, 지역사회, 공공연구기관에 미치는 기술적·사회적 파급효과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기술을 출자하였을 경우 향후 연구개발이나 국내 중소기업의 사업 활동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연구소기업이 폐업하거나 출자한 기술에 대한 지배력이 약화되었을 때 해외 기술 유출이 우려되는 대형 기술에 속하는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반면에 기술을 출자함으로써 공공연구기관과 기업 간 협력이 크게 강화되거나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인지, 향후에도 공공연구기관의 지속적인 연구개발 계획에 포함되어 있거나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을 활용하기에 적합한 기술인지를 검토한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 또한 출자 대상 기술을 바탕으로 실제로 연구소기업이 설립되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출자 대상 기술을 바탕으로 연구소기업을 설립할 공동출자 기업이 있는 기술이라면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 역량과 기업이 보유한 경영자원의 결합을 통해 기술사업화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기술이전 과정에서 기술수요자의 기술 도입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기술수요자가 기술도입을 위한 사양서를 작성하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보유하고 있는 기술 중 기술수요자에게 적합한 기술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외부 기업이 공공연구기관에 연구소기업 설립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의 확보, 발명자 인터뷰, 기술이전 심의회나 연구소기업 지원 조직을 통한 평가와 심의의 과정을 거쳐 출자 대상 기술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먼저 수요 기업이 요청하는 기술의 출자 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는데 해당 기술의 권리 관계 확인, 기술실시권 허여 여부 확인, 발명자 인터뷰 등을 통한 기술 사업화 가능성 검토 등을 통해 기술 출자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게 된다.

해당 기술이 출자가 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되면 최종적으로 출자 대상 기술로 선정하기 위해 기술수요기업(공동출자 기업)의 사업화 역량에 대한 검토와 함께 해당 기술의 사업화(활용) 방법으로써

연구소기업 설립이라는 방식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기술 수요 기업의 사업화 역량은 기술 수요기업의 재무상태, 기술 혁신 능력, 기술사업화 능력, 경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해당 기술의 사업화(활용) 방법으로써 연구소기업 설립이라는 방식의 타당성 검토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술 출자에 따른 기술적 또는 사회적 파급효과, 연구소기업 설립의 기대효과를 확인한다는 의미이다.

연구소기업 출자 기술 발굴 절차와 타당성 검토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출자 기술 발굴 및 선정   | 타당성 검토   |
|---|--|
| <p><b>공공 연구 기관</b></p> <p>연구개발 책임자 또는 기술개발에 참여한 연구자<br/>↓<br/>기술 출자 계획서<br/>↓<br/>심의 및 선정<br/>(기술이전 전담부서 또는 연구소기업 지원 조직 등)</p> <hr/> <p>기술이전 전담부서 또는 연구소기업 지원부서<br/>↓<br/>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기술 선별<br/>↓<br/>발명자 인터뷰<br/>↓<br/>심의 및 선정</p>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출자 대상 기술의 우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등</li> <li>보유하고 있는 기술 특성에 맞는 기술 평가 방법과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활용 필요</li> </ul> </li> <li>출자 대상 기술의 사업화(활용) 방법으로써 연구소기업 설립 방식의 타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술 출자에 따른 기술적 또는 사회적 파급</li> <li>효과 검토</li> <li>연구소기업 설립의 기대효과 실현 가능성 검토</li> </ul> </li> </ol>  |
| <p><b>외부 기업</b></p> <p>기술 수요기업(공동출자 기업) 제안<br/>↓<br/>기술 확인<br/>↓<br/>발명자 인터뷰<br/>↓<br/>심의 및 선정<br/>(기술이전 전담부서 또는 연구소기업 지원 조직 등)</p>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술의 출자 가능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당 기술의 권리 관계 확인, 기술실시권 허여 여부 확인</li> <li>발명자 인터뷰 등을 통한 기술 사업화 가능성 검토 등</li> </ul> </li> <li>기술 수요기업의 사업화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무상태, 기술 혁신 능력, 기술사업화 능력, 경영 능력 등의 확인</li> </ul> </li> <li>출자 대상 기술의 사업화(활용) 방법으로써 연구소기업 설립이라는 방식의 타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술 출자에 따른 기술적 또는 사회적 파급 효과 검토 등</li> </ul> </li> </ol> |

## (2) 연구소기업 설립 주체 선정

출자 대상 기술이 선정되면 연구소기업 설립 주체를 선정하게 된다. 여기에서 연구소기업 설립 주체는 연구개발특구법에 제시된 네 가지 유형의 기관 또는 회사(공공연구기관,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신기술창업전문회사,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sup>1</sup>)와 연구소기업 설립에 참여하게 되는 공동 출자자(합작투자기업(합작투자형), 연구소기업 전환 예정 기업(기존기업 기술출자형), 창업자(신규창업형))를 의미한다.

### 설립주체의 4유형

먼저 연구개발특구법에 제시된 네 가지 유형의 설립 주체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연구소기업을 설립할 수 있다. 연구소기업을 설립할 수 있는 네 가지 유형의 기관이나 회사가 공동으로 연구소기업을 설립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하지만 출자 대상 기술들을 여러 기관이 보유하고 있거나 기술지주회사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가 자본을 출자하고, 공공연구기관이 기술을 출자하는 방식 등을 통해 연구소기업을 공동으로 설립하는 경우도 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에트리홀딩스가 공동으로 연구소기업을 설립한 사례, 대구경북과학기술원과 미래과학기술지주(주)가 공동으로 연구소기업을 설립한 사례 등이 이에 속한다.

### 공동출자자 선정

연구소기업 설립 과정에서 해당 기술의 사업화를 함께 추진해 나갈 협력파트너 즉, 공동 출자자(합작투자기업, 연구소기업 전환 예정 기업, 창업자)를 선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신규 창업형의 경우 공동 출자자인 창업자는 출자기술의 개발을 주도하였거나 개발 과정에 참여한 연구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출자 대상 기술을 발발·선정하는 과정에서 창업자도 같이 확정되는 경우가 많다. 창업자를 포함하여 공동 출자기업(합작투자기업, 연구소기업 전환 예정 기업)을 발굴하는 방법으로는 불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출자기술에 대한 이전 설명회를 개최하거나 기술평가 단계에서 대상기술의 잠재 고객군으로 분류된 기업에 대해 적극적인 아웃바운드(outbound) 마케팅 활동을 펼치는 방법 등이 있다. 이러한 공동출자자 발굴 과정을 거쳐 확보된 후

1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10항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해당 회사의 사업을 지배하거나 관리지원하는 것을 주된사업으로 하는 회사



보기업들에 대해서는 기업설명 자료, 연구소기업을 통한 기술사업화 추진 계획 등의 기초 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토대로 1차 평가를 진행하게 된다. 1차 평가를 통해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보다 다면적인 평가를 통해 기업의 기술사업화 역량, 자금조달능력과 같은 경영역량 등을 확인하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기업 CEO 인터뷰를 통해 보다 심층적으로 기업의 기술사업화 및 경영역량을 확인하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선정된 기업은 공공연구기관의 내부 승인을 통해 공동출자자로 최종 선정된다.

공동출자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연구소기업의 기술사업화 성과가 달라질 뿐만 아니라 기술 출자에 따른 기술적 또는 사회적 파급효과도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공동출자자의 선정은 성공적인 연구소기업 설립 및 운영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절차이다. 공동출자자 선정을 위해서는 다양한 평가기준을 적용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공동출자자의 기술혁신 능력, 기술사업화 능력, 경영능력을 중심으로 평가기준을 선정하여 활용하고 있다. 다만 출자 대상 기술 선정에서와 마찬가지로 기술의 특성이나 기술이 적용될 수 있는 산업 분야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공공연구기관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기술 특성에 맞는 공동출자자 선정 방법과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

### (3) 연구소기업 설립 기본 합의서 체결

연구소기업 설립 주체와 공동 출자자가 선정되면 ‘연구소기업 설립 기본 합의서’를 체결하게 된다. 기본 합의서는 연구소기업 설립에 참여하기로 한 설립주체와 공동 출자자 등이 출자 대상 기술 선정, 설립 주체 선정 등의 과정에서 합의점에 도달한 내용을 문서로 기록한 것이다. 향후 계속하여 연구소기업 설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합의사항을 토대로 최종적인 연구소기업 설립 약정서를 작성하게 된다. 따라서 기본 합의서는 예비적 합의서(Preliminary Agreement) 또는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다.

기본 합의서에는 연구소기업 설립 주체 및 출자자, 연구소기업 설립 형태 및 예상 시기, 출자 대상 기술의 범위, 기술가치 평가 방법 및 비용, 기술 출자 방식, 예상 설립 자본금 규모, 참여 기관별 출자 자산의 종류와 출자 비율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 중 기술 출자 방식은 소유권 이전(양도) 형태의 출자, 실시권(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허여 형태의 출자 등이 활용되는데 기술 사용권에 대한 불확실성을 낮추고 안정적인 기술사업화 추진을 위해서는 소유권 이전 또는 전용실시권 형태의 기술 출자가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연구개발특구법 등에는 기술출자 방식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의 5에는 대학이나 연구기관

### 제3절 연구소기업 설립 절차

이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대하여 산업재산권 등의 이용을 허락할 때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전용실시권을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출자 자산의 종류와 출자 비율과 관련해서는 출자 대상 기술의 전략적 중요성, 사업화 방법, 투자 유치 계획, 향후 연구소기업에 대한 지배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자본금 규모, 출자 자산의 종류, 출자 비율을 정할 필요가 있다.

#### (4) 출자대상 기술에 대한 가치평가

기본 합의를 체결이 완료 되면 기술의 현물출자를 위한 기술가치평가가 진행된다. 연구개발특구법은 “공공연구기관이 연구소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출자할 수 있는 자산·정보 또는 권리에는 지식재산권 및 노하우 뿐만 아니라 현금, 부동산, 연구시설 및 기자재, 그 밖에 양도 가능한 자산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중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지식재산권 및 노하우와 같은 무형의 기술자산은 부동산, 연구시설 등과 같은 유형자산과 동일한 방식으로 평가할 수 없으며 그 가치가 지나치게 높거나 낮게 평가될 가능성도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상법 제290조는 현물출자와 관련하여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정관에 기재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기술의 가치평가, 현물출자의 이행, 현물출자의 검사 등은 반드시 공인된 감정인에 의한 감정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연구소기업 설립을 위해 출자된 기술에 대해서는 공인된 감정인에 의한 기술평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공인된 감정인에 의해 작성된 현물출자에 대한 감정결과를 법인 등록 시 법원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기술 자산에 대한 평가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특례조항에 따라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같은 법 35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은 경우 그 평가 내용은 공인된 감정인에 의한 것으로 인정이 되고 있다. 또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에도 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 대상에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등이 포함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평가기관이 산업재산권 등의 가격을 평가한 경우 그 평가 내용은 공인된 감정인이 감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평가기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은 다음과 같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  
(2015년 6월 기준)

|             |           |
|-------------|-----------|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 국방기술품질원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
| 기술보증기금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 전자부품연구원     | 한국기계연구원   |
| 중소기업진흥공단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 한국발명진흥회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 한국산업은행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조의  
기술평가기관

|             |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기술보증기금      |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 한국환경공단      |
| 국가기술표준원     |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기술가치평가 신청 및 평가 절차는 평가기관마다 조금씩 다르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기술평가 기관을 선정할 때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기술보증기금의 경우 기술평가 절차가 신청·접수 → 예비평가 → 본 평가 → 평가심의 → 평가결과 통보의 5단계로 이루어진다.

현물출자를 위한 기술평가 비용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현재 연구개발실용화진흥원 등 유관 기관에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을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연구개발실용화진흥원에서는 접수 및 대상선정을 담당하고,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시장성 및 사업성 평가를, 한국과학기술연구원·한국전자통신연구원·한국생명공학연구원·한국생산기술연구원·한국기계연구원의 5개 연구기관이 분야별로 기술성 및 권리성을 평가한다.

또한 2015년 4월부터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기술평가기관으로 지정되어 별다른 추가절차 없이 희망기업에게 무료로 기술평가를 지원해주고 있다.<sup>1</sup>

그밖에 현물출자 된 자산의 유형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감정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 감정인으로 감정평가사(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등이 있다.

1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10항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해당 회사의 사업을 지배하거나 관리지원하는 것을 주된사업으로 하는 회사

#### (5) 사업계획서 작성 및 연구소기업 설립 계획 심의

기술평가가 완료되면 기술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소기업 설립 기본 합의서에 포함된 각 참여기관 별 출자 비율을 충족하기 위한 현금 또는 현물 출자 규모가 확정되게 된다. 기술평가 결과에 따라 기본 합의서에서 정한 설립 주체별 출자 비율이나 설립 자본금 규모 등을 재조정할 수도 있다.

기술평가 결과에 따라 출자 기술의 종류, 설립 자본금 규모, 출자 비율 등이 확정되면 연구소기업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내부 심의절차를 거치게 된다. 내부 심의절차에 앞서 연구소기업 설립 주체와 공동 출자자 간의 연구소기업 설립 약정 체결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약정 체결은 일반적으로 기술평가 완료 이후부터 연구소기업 등록 신청 이전까지의 기간에 이루어진다. 이는 정해진 시점이 있는 것은 아니고 연구소기업 설립 주체와 공동 출자자가 협의하여 연구소기업 설립 절차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시점에서 약정체결을 하게 된다. 본 자료에서는 연구소기업 설립 계획에 대한 내부심의 완료 이후에 연구소기업 설립 약정 체결을 다루기로 한다.

‘사업계획서’는 출자 기술의 사업화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기획활동의 결과물로 출자 기술의 사업화에서 무엇이 기회(opportunity)인가를 설명하고, 이 기회를 어떻게 포착 또는 활용할 것인지를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기회를 활용함으로써 연구소기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이나 회사가 어떠한 경제적 이익 또는 사회적 기여를 할 수 있는 것인가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기술사업의 내용 ▲사업화 추진 방법 ▲기술의 시장성 및 판매전망 ▲수익성 ▲자금조달 계획 ▲인력충원 계획 등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연구소기업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연구소기업 등록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사업 타당성 평가 포함)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연구소기업 등록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제시된 연구소기업 사업계획서 서식은 아래와 같다. 특히, 연구소기업 등록 신청을 위해서는 사업타당성 평가를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이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 연구소기업 등록절차 등에 관한 규정의 연구소기업 사업계획서 서식

### 요 약 문

1. 설립 목적
2. 설립기관 개요
3. 연구소기업 현황
4. 출자내역 및 비율
5. 사업계획

### I. 연구소기업 개요

1. 설립목적 및 배경
2. 추진경위
3. 설립기관 개요
4. 연구소기업 현황

### II. 출자계획

1. 연구소기업 주주현황
2. 설립기관 세부출자내역 및 비율

### III. 사업계획

1. 사업내용
2. 시장현황 및 전망
3. 추진계획
4. 기대효과(사업타당성평가)

### 제3절 연구소기업 설립 절차

사업계획서의 일반적 구성과 실제 연구소기업의 사업계획서 작성 사례를 비교해보면 아래와 같다. 연구소기업 사업계획서는 ‘연구소기업 등록절차 등에 관한 규정’의 사업계획서 서식에 맞추어 작성된 것이다. 연구소기업 설립 계획 심의 과정에서 작성한 사업계획서는 추후에 서식에 맞게 수정하여 연구소기업 등록 신청 시 활용할 수 있다.

| 사업계획서의 일반적 구성  | 연구소기업 A의 사업계획서  | 연구소기업 B의 사업계획서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회사 개요</b></li> <li>▪ <b>조직 및 인력 현황</b><br/>(대표자 및 경영진 현황, 조직 및 인력 구성 특징, 주주 현황, 조직도, 고용 계획 등)</li> <li>▪ <b>기술 및 상품(서비스) 개발 계획</b><br/>(제품 및 서비스의 내용, 특허 보유 등 기술현황, 기술 및 상품 개발 현황 및 투자계획)</li> <li>▪ <b>생산 및 시설계획</b><br/>(생산 및 시설 현황, 생산 공정, 원부자재 사용 및 조달계획, 시설 투자 계획, 공장입지 및 공장설립 계획)</li> <li>▪ <b>시장성 및 판매계획</b><br/>(관련 산업의 최근 상황, 동업계 및 경쟁회사 현황, 시장 규모 및 자사 제품 수요 전망, 연도별 판매계획 및 마케팅 전략)</li> <li>▪ <b>재무계획</b><br/>(재무현황 및 추정, 향후 수익 전망)</li> <li>▪ <b>자금 운용 및 조달계획</b><br/>(소요자금, 조달계획, 연도별 증자 및 차입계획, 자금조달상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등)</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연구소기업 개요</b><br/>(설립목적 및 배경, 추진경위, 설립기관 개요, 대표자, 경영진 현황, 조직구성)</li> <li>▪ <b>출자계획</b><br/>(연구소기업 주주현황, 설립기관 세부 출자내역 및 비율, 출자 대상 기술 및 기술출자 금액)</li> <li>▪ <b>사업화 제품 및 사업 내용</b><br/>(사업화 제품, 사업 내용)</li> <li>▪ <b>국내외 시장 규모</b></li> <li>▪ <b>판매계획 및 전략</b><br/>(판매계획, 경쟁사와의 차별화 전략, 시장 진입 전략, 해외시장 진출계획, 수출 가능성)</li> <li>▪ <b>추진계획</b><br/>(단계별 발전 계획, 목표달성을 위한 성공계획)</li> <li>▪ <b>재무계획</b><br/>(추정손인 계산서)</li> <li>▪ <b>조직구성 및 인력계획</b><br/>(조직구성, 인력계획)</li> <li>▪ <b>기대효과</b><br/>(사업타당성평가)</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연구소기업 개요</b><br/>(설립목적 및 배경, 추진경위, 설립기관 개요, 대표자, 경영진 현황, 조직구성)</li> <li>▪ <b>출자계획</b><br/>(연구소기업 주주현황, 설립기관 세부 출자내역 및 비율, 기술출자 현물 상황)</li> <li>▪ <b>사업내용</b><br/>(기술개요, 특허 현황, 기술의 적용 가능 제품 및 서비스)</li> <li>▪ <b>국내외 기술동향</b><br/>(국내 기술동향, 국외 기술동향, 기술 경쟁력, 기술의 파급성)</li> <li>▪ <b>사업성</b><br/>(수요 특성, 공급 특성, 국내 시장 규모 및 전망, 해외 시장 규모, 시장의 특성, 국내외 주요 수요처 현황)</li> <li>▪ <b>기술개발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b><br/>(현재의 제품 개발 상태, 성능평가 결과, 기술개발 문제점 및 대책)</li> <li>▪ <b>양산체제 구축계획</b><br/>(연도별 생산 목표, 생산 공정 및 외주 생산 활용 등 생산 체계, 주요 원부자재 조달방안, 완제품 생산 계획)</li> <li>▪ <b>사업화 전략 및 추진계획</b><br/>(사업화 전략, 사업화 추진 전략)</li> <li>▪ <b>인력 운영 계획</b></li> <li>▪ <b>기대효과</b></li> </ul> |

공공연구기관은 연구소기업 설립에 관한 내부 심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과 함께 기술 출자, 연구원 인력파견(휴직 또는 겸직), 연구소기업에 대한 지원, 출자로 발생한 수익금 배분 및 활용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관의 내부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경우 ‘연구소기업 설립 및 지원 규정’을 2007년부터 제정하여 활용하고 있다. 이 규정에는 연구소기업 설립 절차, 출자 지분 수익 배당 및 사용, 연구원의 겸직 및 파견, 연구소기업 지원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경우에는 ‘창업 및 출자 관리 규정’을 제정하여 활용하고 있다. 이 규정에는 연구소기업의 정의, 창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업의 설립 및 기술이전, 창업자의 휴직, 창업자에 대한 지원, 실시권 허여 및 주식 보유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6) 출자 완료 및 법인 등기

연구소기업 설립 계획에 관한 내부 심의가 완료되면 연구소기업 설립 주체와 공동 출자자 간의 연구소기업 설립 약정이 체결되고, 약정에 따라 현금 및 현물 출자가 이루어지게 된다.

### 연구소기업 설립 약정

앞서 살펴본 기본 합의서가 연구소기업 설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합의사항을 작성한 것으로 예비적 합의서 또는 양해각서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이라면 ‘연구소기업 설립 약정’은 연구소기업 설립에 필요한 핵심 사항을 담은 최종 합의서에 해당한다. 따라서 약정서의 모든 내용은 향후 연구소기업의 정관에 반영되거나 설립 이후의 모든 활동에 우선적으로 반영된다. 또한 약정서에 규정된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상응하는 손해 배상 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

#### 연구소기업 설립 약정서의 주요 내용

1. 연구소기업 설립 시기 및 소재지  
(본점, 사무소 등)
2. 사업 목적
3. 출자내용(기술 및 현금)에 관한 사항
4. 정관제정에 관한 사항
5. 설립 시 자본금 및 출자비율
6. 발행 주식의 종류와 수
7. 이사 및 감사선임에 관한 사항
8. 주식양도 및 신주발행에 관한 사항
9. 출자기술의 사업화 지원 및 의사 결정에 관한 사항
10.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등

약정서 작성 시에는 향후 연구소기업 설립, 운영 과정에서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는 사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참여 기관 상호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약정서에 명확한 용어와 문장으로 표현하여야 한다. 또한 당사자 적격성 및 대리행위의 유효성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약정 체결 전에 법인법, 소재지, 대표자 성명, 대리인의 경우 대리권 유무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 법인등기

법인 등기는 합작투자형, 신규창업형과 같이 신설법인이 만들어져 설립등기가 필요한 경우와 기존 기업 기술출자형과 같이 신주의 발행 등으로 인해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로 나눌 수 있다. 특히 주식회사의 설립등기는 상법 제317조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모집설립과 발기설립 방식 모두 가능하다. ‘모집설립’은 발기인이 연구소기업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일부를 인수하고 나머지는 발기인이 주주를 모집하는 방식이다. ‘발기설립’은 연구소기업 설립 시 발행한 주식의 총수를 인수하는 경우이다.

상법 제317조는 발기인이 회사설립 시에 발행한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경우에는 현금출자 이행에 대한 감사인의 조사·보고, 감사인 또는 공증인의 조사보고서나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대한 심사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발기인이 주주를 모집하는 모집설립의 경우에는 창립총회가 종결한 날 또는 변태설립사항의 변경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하도록 하고 있다.

과거에는 ‘설립 승인 신청서 접수 → 40일 이내(1회에 한하여 20일 이내 연장 가능) 설립 승인 여부 통지 → 설립등기 → 설립등기 30일 이내에 사실 통지’의 순서로 연구소기업 설립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2010년 3월 “연구개발특구법” 시행규칙 제4조가 개정되면서 설립 승인 절차가 연구소기업 등록 절차로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현재는 연구소기업 등록 신청 이전에 설립 등기가 이루어지고, 연구소기업 등록 신청이 있는 경우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이 연구소기업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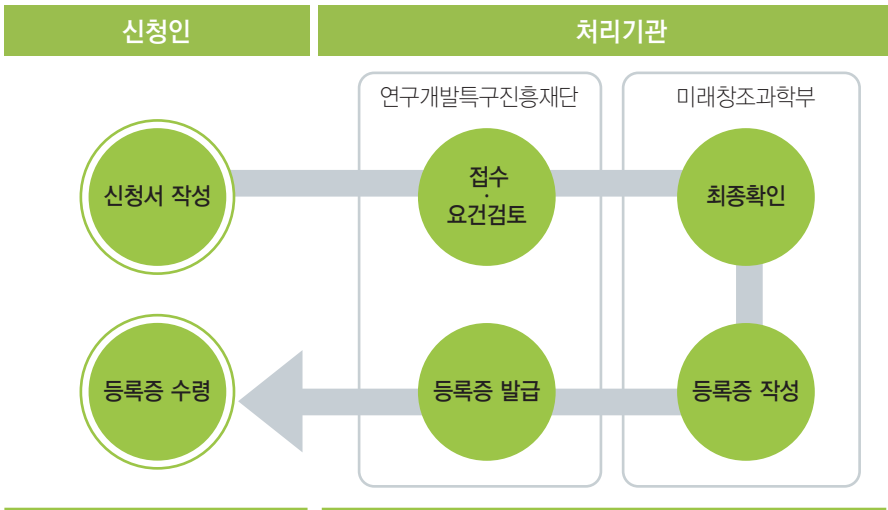
### (7) 연구소기업 등록 신청

법인 등기와 함께 연구소기업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연구소기업 등록신청서와 함께 정관, 보유 인력 및 시설 현황에 관한 서류, 주식 보유 비율 및 명세에 관한 서류, 사업계획서(사업 타당성 평가 포함)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소기업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확인을 받게 된다. 연구소기업 등록 신청을 위해 필요한 제출 서류의 서식은 연구개발특구법 시행규칙(서식 4. 연구소기업 등록 신청서), 연구소기업 등록절차 등에 관한 규정(서식 1. 연구소기업 사업계획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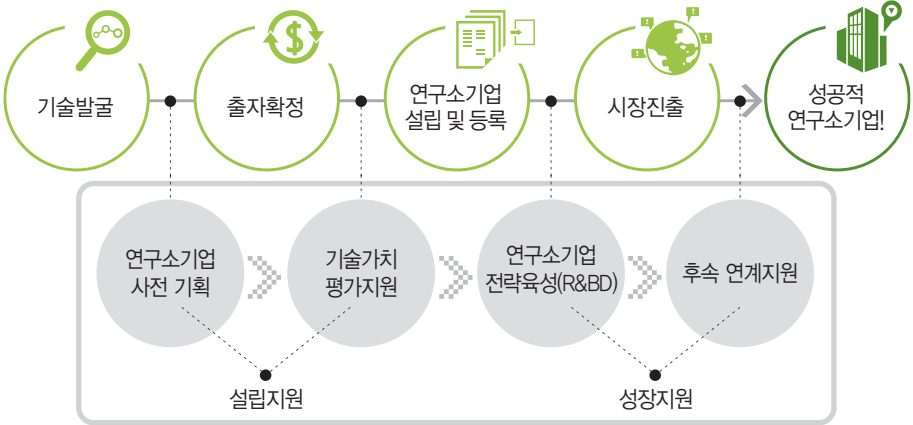
신청자는 등록 여부에 대한 결과를 연구소기업 등록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40일 이내에 통지 받게 된다. 다만,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통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2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연구개발 특구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신청서류 등을 검토하여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 연구소기업 등록증을 재단을 거쳐 설립기관에 교부하게 된다.

연구소기업 등록 신청서의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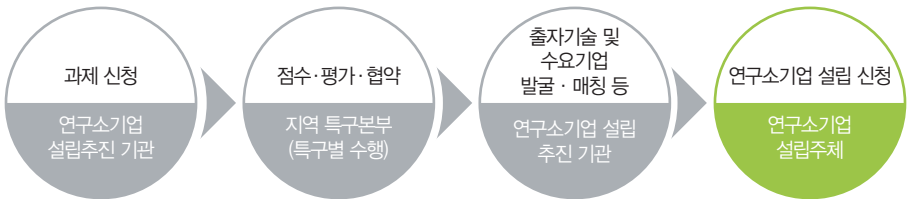
# 제4절 연구소기업 지원 사업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연구소기업 설립 이전 단계부터 성장까지 전주기에 걸쳐 연구소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 연구소기업 사전기획

연구소기업 제도는 특성상 설립단계에서 일반적인 창업 또는 자회사 설립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서는 연구소기업 설립의 사전검토단계에서 필요한 기획 과정 즉, ▲비즈니스모델링 ▲공공기관 우수기술 및 민간기업 수요발굴 ▲협력대상기업 탐색·매칭 ▲법률회계 등을 지원한다. 연구소기업 설립을 검토 중인 연구기관, 대학, 기업 및 예비창업자 모두가 대상이 된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연구소기업 사전기획 절차]

## 연구소기업 가치평가

연구소기업 설립을 위한 출자(예정) 기술의 가치평가 또는 이를 통한 사업타당성평가를 지원한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제9조의3에 따른 기관이나 기업이 그 대상이며,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서 직접 가치평가를 진행한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기술평가 절차]

## 연구소기업 사업화(R&BD) 지원

창업초기기업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서 진행하는 과제에 참여하여 금전적 지원을 받게 된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으로는 특구법 제9조의5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연구소기업 또는 연구소기업 등록신청서 제출기업이다. 등록신청서 제출기업은 과제 선정 후 협약체결 전까지 연구소기업 등록이 완료되어야 한다. 지원내용은 ▲시험·분석·평가 ▲보완기술 확보 ▲기술패키징 ▲시작품 개발 ▲국내외 표준인증 ▲양산기술개발 ▲목업 제작 ▲마케팅 기획 등으로 기술적 타당성 검증과 상용화 기술개발 등 사업화 전주기를 지원한다. 선정평가 절차는 아래와 같다.



특구별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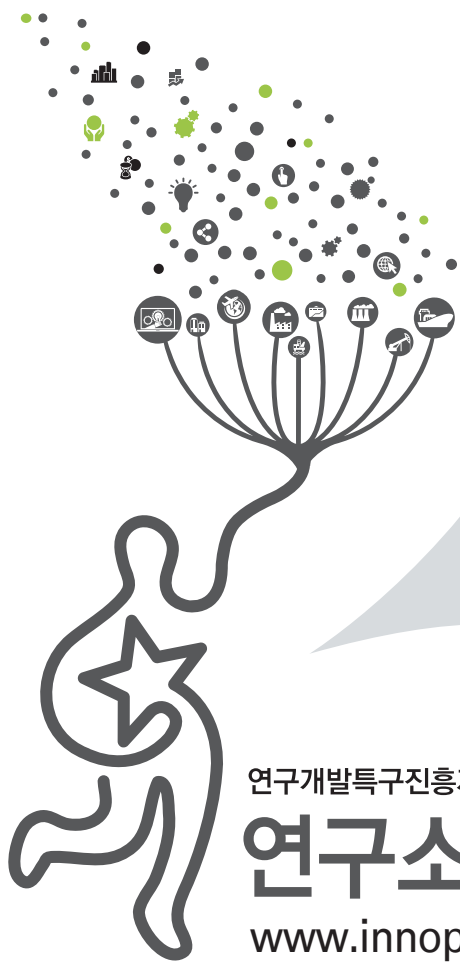
통합실시

특구별 시행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기술평가 절차]

## 기타 후속 성장 지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이외에도 해외진출 기술금융 등 연구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각종 육성 사업을 기업별 특성에 맞게 지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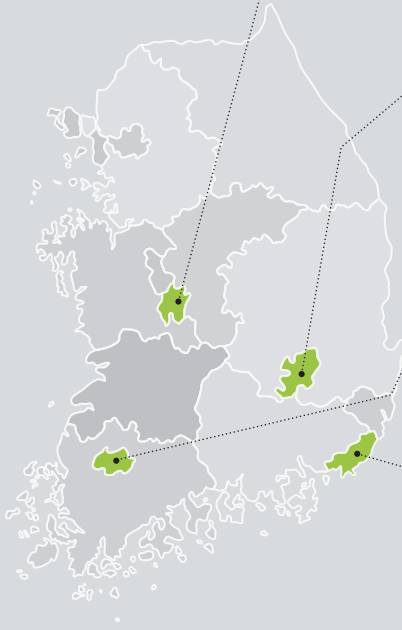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연구소기업

[www.innopolis.or.kr](http://www.innopolis.or.kr)

# 각 특구별 연구소기업 문의 연락처



● **대덕연구개발특구본부**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123번길 27-5  
(도룡동 4-27)

**Tel : 042-865-8984**

● **대구연구개발특구본부**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11길62(호산동711)  
대구융합R&D센터 1131호

**Tel : 053-592-8350**

● **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3길 107번지(대촌동 958-3)  
광주테크노파크 본관 416호

**Tel : 062-576-9309**

● **부산연구개발특구본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남로 1414(하단동)  
삼영빌딩 10층

**Tel : 051-293-4854**

---

연구소기업 홍보, 설명자료

[www.innopolis.or.kr](http://www.innopolis.or.kr) > 홍보마당 > 특구발간물

---

연구소기업 소개영상 **YouTube**

---

Q Search

연구소기업 |  Q

연구소기업에 관한 영상 및 자료를  
이노폴리스 홈페이지 또는 유튜브에서 검색 하실 수 있습니다.

●

;

연구소기업 설립 가이드북

# 부록

---

[Q&A 특] 연구소기업 만들기  
설립기관별 연구소기업  
연구소기업 관련 주요 규정  
기술이전 VS 기술라이센싱 비교

# Q&A 전체 카톡스타일로 new 구성

Q&A 미작업 \_ 주말사이 작업들어갈 예정입니다.

## Q&A로 알아보는 연구소기업 설립

Q

01

현재 기관 여건 상 단독으로 연구소기업을 설립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공공연구기관이나 기술지주회사와 함께 연구소기업을 설립하려고 할 때 특별한 제약 조건이 있나요?

없습니다. 연구소기업을 공동으로 설립하려는 기관이 연구개발특구법에 규정된 설립 주체(공공연구기관,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신기술창업전문회사,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중 하나라면 단독으로 연구소기업을 설립하는 경우와 동일합니다. 또한 공동으로 연구소기업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각 기관이 보유한 연구소기업 주식(지분 포함)을 합한 비율이 20% 이상이면 됩니다.

Q

02

기술지주회사가 현금을 출자하고, 공공연구기관은 기술 출자가 아니라 기술의 실시권을 허여(라이선스)하는 방식으로 연구소기업을 설립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하지만, 연구소기업의 설립 목적은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출자를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선스를 통한 등록 신청 시 해당기술의 사업화 계획이 명확하게 나타나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13조는 연구소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출자할 수 있는 자산·정보 또는 권리에는 지식재산권 및 노하우뿐만 아니라 현금, 부동산, 연구시설 및 기자재 등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 출자가 연구소기업 설립 요건은 아닙니다. 또한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신기술창업전문회사,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는 연구소기업을 설립할 수 있는 기관에 포함되기 때문에 기술지주회사가 현금 출자를 통해 연구소기업 주식의 20% 이상을 보유하게 되었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Q

03

그렇다면 기술지주회사가 현금을 출자하고, 공공연구기관은 기술 출자가 아니라 기술의 실시권을 허여(라이선스)하는 방식으로 설립된 연구소기업은 설립유형 중 어디에 속하게 되는 건가요?

현재 연구소기업 설립 유형(합작투자형, 기존기업 기술출자형, 신규창업형)을 구분하는 것은 연구소기업에 출자하는 자산이나 권리의 종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 출자자의 유형과 공동 출자자의 참여 형태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기술지주회사 외에 다른 공동 출자자가 누구인가와 공동 출자자가 어떠한 형태로 연구소기업 설립에 참여했는지에 따라 합작투자형, 기존기업 기술출자형, 신규창업형으로 구분됩니다. 예를 들어, 기술지주회사 외에 기존기업이 공동 출자자로 참여하고, 공동 출자자와 함께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는 형태라면 합작투자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Q

04

연구소기업의 설립 요건 중 하나는 특구 안에 설립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공장이나 부설 연구소, 지점의 소재지도 여기에 해당되나요?

아닙니다. “특구 안에 설립되어야 한다” 는 것은 연구소기업 설립 등기 시 본점 소재지가 연구개발 특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장 또는 부설연구소, 지점 등의 소재지는 지역적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Q&A 전체 카톡스타일로 new 구성

Q

**05** 3가지 연구소기업 설립 유형 중 공공연구기관에 가장 적합한 연구소기업 설립 유형은 무엇인가요?

출자 기술의 특성이나 관련 산업 및 시장의 특성, 사업화 과정의 특성, 공동출자자 선정 가능성 등에 따라 다릅니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적합한 연구소기업 설립 유형을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 분야의 전문성 및 연구개발 능력과 기업이 보유한 다양한 경영자원 및 보완자산의 결합이라는 측면에서는 합작투자형이 유리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규창업형의 경우에는 연구소기업의 기반이 되는 출자기술의 개발을 주도하였거나 개발 과정에 참여한 연구자가 창업자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영진이 기술에 대한 이해도나 지식이 매우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참고로 2015년 6월 기준 설립된 113개 연구소기업을 설립 형태에 따라 구분하면 합작투자형이 45개(39.8%)로 가장 많고, 기존기업 기술출자형 35개(31.0%), 신규창업형 33개(29.2%)입니다.

Q

**06** 공공연구기관 연구원이 연구소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 또는 겸직하려고 할 때 제약이 있나요?

관련 법률 및 기관 내부 규정에 따라 가능합니다. 연구개발특구법은 공무원이 아닌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은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연구소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겸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휴직기간은 3년 이내가 원칙이지만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휴직 기간을 3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겸직과 관련하여서는 겸직 기간 등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공공연구기관에서는 내부 규정을 제정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연구개발특구법의 규정을 기초로 하여 연구원의 휴직 또는 겸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관의 내부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Q

**07** 연구소기업이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은 무엇이 있나요?

연구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법인세 등의 감면 대상이 됩니다.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게 됩니다. 또한 지방세 혜택도 받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대전광역시 시세감면조례'에 따라 연구소기업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Q&A 전체 카톡스타일로 new 구성

Q  
08

연구소기업의 증자(增資)로 공공연구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소기업 주식 비율이 20% 미만일 경우 연구소기업 등록이 취소되고, 법인세 등의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아닙니다. 5년 동안의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2014년 11월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공연구기관 또는 기술지주회사 등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해당 연구소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비율이 20%(등록된 연구소기업이 기술개발 투자를 위하여 자본금을 증액한 경우에는 10%)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주식 보유 비율이 5% 이상일 경우에는 5년 동안 등록의 취소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Q  
09

연구소기업이 받는 법인세 등의 감면 혜택은 출자 기술과 관련된 사업영역에 대해서만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연구소기업이 감면대상 사업장에서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감면대상사업을 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조특법 시행령에 감면대상사업으로 정하고 있는 사업에 포함된다면 출자 기술과 관련된 사업영역 이외의 사업도 감면대상사업으로 적용 받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감면대상사업(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의 2)

1. 「생명공학육성법」 제2조에 따른 생명공학과 관련된 산업(중자 및 모목생산업, 수산물부화 및 종묘생산업 포함)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4. 「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과 관련된 산업

# Q&A 전체 카톡스타일로 new 구성

Q

10 연구개발 특구 밖에 소재한 공장이나 영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도 세액감면이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연구개발 특구 내 사업장을 감면대상 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Q

11 연구소기업 출자 기술을 발굴하고 선정하는 단계에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가장 기본적으로 출자 대상 기술의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등을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당 기술의 권리 관계 확인, 기술실시권 허여 여부 확인, 발명자 인터뷰 등을 통한 기술 사업화 가능성 검토 등을 통해 출자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동시에 기술 출자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파급효과와 기술 출자 시 연구소기업 설립의 기대효과를 실제로 얻을 수 있는 기술인지를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특히, 특정 기술을 출자하였을 경우 국가, 지역사회, 공공연구기관에 미치는 경제적, 사회적 파급효과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술을 출자하였을 경우 향후 연구개발이나 국내 중소기업의 사업 활동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연구소기업이 폐업하거나 연구소기업에 대한 지배력이 약화되었을 때 해외로의 기술 유출이 우려되는 기술인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Q

12 기술 출자를 위한 기술평가 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연구소기업 설립을 위한 과정 중 설립주체가 희망할 경우 재단에서 무료로 기술평가를 지원합니다. 이 때 신청자는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재단으로 제출하면 기술평가 부서는 요건 및 사전기술검토, 기술 및 기업 현장조사, 평가요인 분석, 가치산출의 순서로 평가를 진행하며, 최종적으로 기술출자를 위한 평가보고서가 제공됩니다.

Q

**13** 연구소기업의 법인 설립 등기는 연구소기업 등록 신청 이전에 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2010년 3월에 연구개발특구법 시행규칙 제4조가 ‘연구소기업 설립 승인 절차’ 에서 ‘연구소기업 등록 절차’ 로 개정되면서 현재는 연구소기업 등록 신청 이전에 설립 등기가 이루어지고, 연구소기업 등록 신청이 있는 경우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이 연구소기업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행규칙 개정 전에는 연구소기업 설립 승인 통지 이후 설립 등기를 하고, 30일 이내에 설립 등기 사실을 통지하는 순서가 일반적이었습니다.

Q

**14** 연구소기업 등록 신청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이고, 등록 여부 결정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되나요?

등록 신청을 위해 연구소기업 등록신청서와 함께 정관, 보유 인력 및 시설 현황에 관한 서류, 주식 보유 비율 및 명세에 관한 서류, 사업계획서(사업 타당성 평가 포함)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등록 여부는 등록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40일 이내(1회에 한하여 20일 이내로 기간 연장 가능)에 통지받게 됩니다.

Q

**15** 연구소기업으로 등록받은 법인이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던 중 연구소기업 등록이 취소되었을 경우에 세제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연구소기업으로 등록된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의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감면기간 중에 연구소기업 등록이 취소되어 연구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같은 법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기업이 잔존감면기간 중에 연구소기업으로 다시 등록된 경우에는 그 재등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잔존감면기간동안 동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설립유형 및 출자기관별 연구소기업 리스트 (‘15.6.30 기준)

부록 2번. 전반적으로 정렬 다시 들어갈 예정.  
내용순서가 맞나만 체크부탁드립니다.

I. 합작투자형

1. 단독출자

1) 정부출연연구기관

| 특구 | 출자기관       | 기업명         | 기술분야   |
|----|------------|-------------|--------|
| 대덕 | 한국원자력연구원   | (주)콜마비앤에이치  | 바이오의료  |
|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 (주)메디셀      | 바이오의료  |
|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 (주)미코바이오메드  | 바이오의료  |
|    | 한국표준과학연구원  | 바우(주)       | 기계소재   |
|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주)마인즈랩     | 정보통신   |
|    | 한국기계연구원    | (주)동주하이텍    | 기계소재   |
|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주)정상라이다    | 전기전자   |
|    | 한국원자력연구원   | (주)듀켄바이오연구소 | 화학     |
|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 (주)이청       | 정보통신   |
| 대구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 성림희토금속(주)   | 재료     |
|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주)케이앤에스에너지 | 신재생에너지 |

2)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특구 | 출자기관      | 기업명     | 기술분야  |
|----|-----------|---------|-------|
| 대구 | 한국로봇융합연구원 | (주)에나로봇 | 산업용로봇 |
| 광주 | 자동차부품연구원  | (주)팔    | 자동차부품 |

## 3) 대학 및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 특구      | 출자기관         | 기업명          | 기술분야             |
|---------|--------------|--------------|------------------|
| 대덕      | 한국과학기술원      | (주)올레브       | 기계소재             |
|         | 한국과학기술원      | 아이카이스트       | 전기전자             |
|         | 서강대기술지주회사    | (주)제이앤엘      | 정보통신             |
|         | 한밭대학교기술지주회사  | (주)탑앤씨       | 화학               |
| 대구      | 대구경북과학기술원    | (주)그린모빌리티    | 전기전자             |
|         | 대구경북과학기술원    | (주)정관머티리얼    | 전기전자             |
|         | 대구경북과학기술원    | (주)인네이처씨앤에이치 | 바이오의료            |
|         | 대구경북과학기술원    | 케어로보시스템스(주)  | 바이오의료            |
|         | 대구경북과학기술원    | (주)디지엠텍      | 바이오의료            |
|         | 대구경북과학기술원    | (주)바인아이티     | 정보통신             |
|         | 경북대학교기술지주(주) | (주)이노빌       | 전자부품제조           |
|         | 대구경북과학기술원    | (주)한국소재      | 화학               |
|         | 대구경북과학기술원    | (주)지텍아이씨에스   | 산업용로봇            |
|         | 경북대학교기술지주(주) | (주)신생그린팜     | 화학               |
|         | 대경공동기술지주회사   | (주)역토펬지니어링   | 기계소재             |
|         | 대경공동기술지주회사   | (주)마이크로메디    | 전기전자             |
|         | 광주           | 전남대기술지주회사    | 비에이치티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
| 광주과학기술원 |              | (주)인지바이오     | 바이오의료            |
| 부산      | 한국해양대학교기술지주  | (주)우신이엠씨     | 전기전자             |

## 4) 신기술창업전문회사

| 특구 | 출자기관        | 기업명          | 기술분야  |
|----|-------------|--------------|-------|
| 대덕 | 에트리홀딩스      | (주)스마트큐      | 전기전자  |
|    | 에트리홀딩스      | (주)케이씨피이노베이션 | 정보통신  |
|    | 에트리홀딩스      | (주)아리텔       | 정보통신  |
|    | 에트리홀딩스      | 엔라이팅         | 전기전자  |
|    | 미래과학기술지주(주) | (주)크레셈       | 기계소재  |
|    | 에트리홀딩스      | (주)버드레터      | 지식서비스 |
|    | 한국과학기술지주(주) | (주)디에스브로드캐스트 | 전기전자  |

2. 공동출자

| 특구 | 출자기관                   | 기업명          | 기술분야   |
|----|------------------------|--------------|--------|
| 대덕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에트리홀딩스      | (주)솔리드링크     | 정보통신   |
|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에트리홀딩스      | (주)인트리       | 정보통신   |
| 대구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에트리홀딩스      | (주)감마스팩트라    | 전자부품제조 |
|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에트리 홀딩스     | (주)이케이텍      | 전기전자   |
|    |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미래과학기술지주(주) | (주)평화기술연구원   | 전기전자   |
| 광주 | 미래과학기술지주(주), 광주과학기술원   | 에코에너지솔루션즈(주) | 정보통신   |

II. 기존기업기술출자형

1. 단독출자

1) 정부출연연구기관

| 특구 | 출자기관      | 기업명        | 기술분야        |
|----|-----------|------------|-------------|
| 대덕 | 한국기계연구원   | (주)템스      | 기계소재        |
|    | 한국표준과학연구원 | (주)재원티앤에스  | 화학          |
|    | 한국기계연구원   | (주)제이피이    | 기계소재        |
|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주)비티웍스    | 정보통신        |
|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주)테스트마이다스 | 정보통신        |
|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주)넥스프라임   | 정보통신        |
|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주)지토피아    | 정보통신        |
|    | 한국원자력연구원  | 서울프로폴리스(주) | 바이오의료       |
|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디엠브로(주)    | 정보통신        |
|    | 한국화학연구원   | (주)케이에너지   | 에너지자원       |
|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주)쓰리디누리   | 정보통신        |
|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 보광리소스(주)   | 바이오의료       |
|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주)신테카바이오  | 유전체분석       |
|    | 부산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주)케이에스티플랜트 |



## 2) 대학 및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 특구 | 출자기관            | 기업명       | 기술분야  |
|----|-----------------|-----------|-------|
| 대덕 | 한국과학기술원         | (주)엠피위즈   | 전기전자  |
|    | 한국과학기술원         | (주)라스테크   | 기계소재  |
|    | 한서대학교           | 알이엠텍      | 화학    |
|    | 제주대학교기술지주회사     | (주)엔엔에프텍  | 전기전자  |
|    | 한남대학교기술지주회사     | (주)아이투비   | 바이오의료 |
|    | 한밭대학교기술지주회사     | (주)아람누리   | 제조업   |
|    | 한국과학기술원         | 레이저닉스(주)  | 제조업   |
| 대구 | 경북대학교기술지주(주)    | (주)루비크라운  | 바이오의료 |
|    | 경북대학교기술지주(주)    | (주)아크에이르  | 바이오의료 |
|    | 전북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주) | (주)제윤메디컬  | 바이오의료 |
| 광주 | 조선대기술지주회사       | (주)신성티케이  | 정보통신  |
|    | 전남대기술지주회사       | (주)제이앤비   | 제조업   |
|    | 전남대기술지주회사       | (주)벤텍프런티어 | 화학    |
|    | 전남대기술지주회사       | (주)네이처인랩  | 바이오의료 |

## 3) 신기술창업전문회사

| 특구 | 출자기관        | 기업명          | 기술분야    |
|----|-------------|--------------|---------|
| 대덕 | 에트리홀딩스      | (주)육성미디어     | 소프트웨어   |
|    | 한국과학기술지주(주) | (주)파인에바      | 전기전자    |
|    | 한국과학기술지주(주) | (주)브이앤아이솔루션  | 전기전자    |
|    | 한국과학기술지주(주) | (주)플렉스컴      | 전기전자    |
|    | 한국과학기술지주(주) | (주)엠피에이테크놀로지 | 기계소재    |
|    | 한국과학기술지주(주) | (주)스몰머신즈     | 제조업     |
| 부산 | 에트리홀딩스      | (주)하버맥스      | 선박IT서비스 |

### III. 신규창업형

#### 1. 단독출자

##### 1) 정부출연연구기관

| 특구 | 출자기관       | 기업명          | 기술분야  |
|----|------------|--------------|-------|
| 대덕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주)오투스       | 전기전자  |
|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주)매크로그래프    | 지식서비스 |
|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주)엠이엘텔레콤    | 정보통신  |
|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주)엔에스이(NSE) | 정보통신  |
|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호전에이블        | 전기전자  |
|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주)알앤에스랩     | 전기전자  |
|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케이에프알티(주)    | 전기전자  |
|    | 한국기계연구원    | (주)마그네타      | 기계소재  |

##### 3) 신기술창업전문회사

| 특구 | 출자기관   | 기업명         | 기술분야  |
|----|--------|-------------|-------|
| 대덕 | 에트리홀딩스 | (주)쏘그웨어     | 정보통신  |
|    | 에트리홀딩스 | 아큐젠헬스케어-수젠텍 | 바이오의료 |
|    | 에트리홀딩스 | (주)감동공장     | 정보통신  |
|    | 에트리홀딩스 | 클라우드젠       | 정보통신  |
| 대구 | 에트리홀딩스 | 뉴런          | 전기전자  |
| 광주 | 에트리홀딩스 | (주)옵텔라      | 정보통신  |

##### 4) 기타

| 특구 | 출자기관      | 기업명        | 기술분야 |
|----|-----------|------------|------|
| 대덕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주)세이프텍리서치 | 기계소재 |

## 2) 대학 및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 특구 | 출자기관         | 기업명             | 기술분야    |
|----|--------------|-----------------|---------|
| 대덕 | 한양대에리카기술지주   | (주)에스엠나노바이오     | 바이오훈료   |
|    | 한국과학기술원      | (주)솔잎기술         | 화학      |
|    | 한남대학교기술지주회사  | (주)한남바이오        | 제조업     |
|    | 한밭대학교 기술지주회사 | (주)리웨이          | 바이오훈료   |
|    | 한밭대학교 기술지주회사 | (주)테크앤          | 정보통신    |
|    | 한밭대학교 기술지주회사 | (주)에어사운드        | 전기전자    |
| 대구 | 경북대학교기술지주(주) | (주)아이엘비에스       | 정보통신    |
|    | 전남대기술지주회사    | (주)올라이스         | 바이오(식품) |
| 광주 | 전남대기술지주회사    | (주)청어람알앤씨건축사사무소 | 바이오     |
|    | 전남대기술지주회사    | (주)브이아이티시스템     | 정보통신    |
|    | 전남대기술지주회사    | (주)가든플란트        | 농업      |
|    | 전남대기술지주회사    | (주)제이케어         | 바이오훈료   |
| 부산 | 부경대학교기술지주(주) | 슈퍼티그웰딩(주)       | 기계소재    |
|    | 부경대학교기술지주(주) | (주)차세대소재연구소     | 공업소재    |
|    | 동아대학교기술지주    | 동아인코팜(주)        | 바이오미용   |
|    | 부산대학교기술지주(주) | (주)효원파워텍        | 전기전자    |
|    | 부산대학교기술지주(주) | (주)타우피엔유메디칼     | 바이오훈료   |
|    | 부경대학교기술지주(주) | (주)부경대수산가공연구소   | 바이오훈료   |



# 연구소기업 설립, 운영, 등록 관련 법규(발췌)

##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1. "연구개발특구"(이하 "특구"라 한다)란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의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서 제4조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4. "정부출연연구기관"이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을 말한다.
5. "공공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가. 국립연구기관
  -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 다.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과 관련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6. "연구소기업"이란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하여 특구 안에 설립된 기업으로서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등록된 기업을 말한다.

## 특별법 제9조의3(연구소기업의 설립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회사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연구소기업을 설립할 수 있다.

1. 공공연구기관
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8항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적합한 회사
4.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②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연구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내용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③ 연구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회사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연구소기업의 자본금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해당

## 특별법 제9조의4(연구소기업의 등록 취소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연구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소기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주식 보유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의 취소를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5.2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보유 비율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3. 연구소기업의 영업이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한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힘들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제9조의3제3항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5. 휴업, 부도, 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기업 활동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연구소기업



연구소기업의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유할 것

- 2.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할 것
- 3. 특구 안에 설립할 것

④ 제1항에 따라 연구소기업을 설립한 공공연구기관은 연구소기업에 대한 출자로 발생한 수익금과 잉여금을 연구개발 활동이나 연구소기업에 대한 재출자(再出資)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6.]

**시행령 제3조(공공연구기관의 범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2.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전문개정 2012.7.26.]

**시행령 제13조(연구소기업의 등록 등)**

① 법 제9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적합한 회사"란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하는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50퍼센트를 초과하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를 말한다.

② 법 제9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회사는 연구소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정보 또는 권리를 출자할 수 있다.

- 1. 지식재산권 및 노하우
- 2. 현금
- 3. 부동산
- 4. 연구시설 및 기자재
- 5. 그 밖에 양도 가능한 자산

③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연구소기업으로 등록하려는 기관 또는 회사는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기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1. 정관
- 2. 보유 인력 및 시설 현황에 관한 서류
- 3. 주식 보유 비율 및 명세에 관한 서류
- 4. 사업계획서(사업 타당성 평가를 포함한다)

④ 법 제9조의3제2항 후단에 따라 연구소기업은 제3항에 따라 등록된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연구소기업 변경등록 신청서에 그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1. 상호
- 2. 본점의 소재지
- 3. 대표자
- 4. 법 제9조의3제3항제1호에 따른 주식 보유 비율

⑤ 법 제9조의3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20퍼센트를 말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소기업의 등록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7.26.]

**시행규칙 제4조(연구소기업 등록 절차 등)**

① 법 제9조의3제2항 및 영 제13조제3항·제4항에 따라 연구소기업으로 등록하거나 변경등록하려는 기관 또는 회사는 별지 제4호서식의 연구소기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를 진흥재단을 거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진흥재단이 연구소기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4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통지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2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진흥재단을 거쳐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등록하거나 변경등록을 한 연구소기업에 별지 제5호서식의 연구소기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소기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4.> [전문개정 2012.7.27.]

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1.26.]

**시행령 제14조의2(연구소기업의 등록 취소)**

① 법 제9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보유 비율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란 법 제9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회사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해당 연구소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비율이 20퍼센트(등록된 연구소기업이 기술개발 투자를 위하여

자본금을 증액한 경우에는 10퍼센트)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11.4.>

② 법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주식 보유 비율이 5퍼센트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 주식 보유 비율이 제1항에 따른 비율 미만이 된 날부터 5년 동안 등록의 취소를 유예할 수 있다. <신설 2014.11.4.>

③ 법 제9조의4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개정 2014.11.4.> [전문개정 2012.7.26.]

**특별법 제9조의5**

(공공연구기관 연구원의 휴직 및 겸직 허용 등)

① 공무원이 아닌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한국과학기술원법」 제15조, 「광주과학기술원법」 제14조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제12조의3에 따른 교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연구소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대표자 또는 임직원으로 겸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을 3년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③ 제1항에 따라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이 6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는 휴직일부터 해당 공공연구기관에 그 휴직자의 수에 해당하는 연구원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9.12.30.] [목적개정 2014.5.28.]



# 연구소기업 세제혜택 관련 법규(발췌)

## 제한법 제12조의2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의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생물산업·정보통신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2.1.26., 2013.1.1.)

1.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정을 받은 첨단기술기업
  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등록된 연구소기업
- ②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기업의 감면대상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감면대상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지정을 받은 날 또는 등록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③ 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총합계액이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하여 세액을 감면한다. <신설 2010.12.27.>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50
  2.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적은 금액
    - 가.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
    - 나. 제1호의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20
- ④ 제2항에 따라 각 과세연도에 감면받을 소득세

## 시행령 제11조의2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서 "생물산업·정보통신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8.18., 2010.2.18., 2012.2.2., 2013.3.23.)

1. 「생명공학육성법」 제2조에 따른 생명공학과 관련된 산업(종자 및 묘목생산업, 수산물부화 및 종묘 생산업을 포함한다)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4. 「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과 관련된 산업

② 법 제12조의2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이란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는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을 말한다.  
(신설 2010.12.30.)

③ 법 제12조의2제5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보고,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며,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30.)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 감면한도를 적용할 때에는 제3항제1호의 금액을 먼저 적용한 후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적용한다.

〈신설 2010.12.27.〉

- ⑤ 제3항제2호를 적용받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 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27.〉

- ⑥ 제3항 및 제5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12.27.〉
- ⑦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전문개정 2010.1.1.]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12조의2제3항제2호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의 합계액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

- ④ 법 제12조의2제6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23조제10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0.12.30., 2012.2.2., 2015.2.3.〉

- ⑤ 법 제12조의2제7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30.〉  
[본조신설 2007.2.28.]  
[제11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11조의2는 제12조로 이동 (2014.2.21.)]

Q&A와 함께 작업될 예정입니다.

# 각 지방별 특구 지방세 혜택 1

추가제공된 한글파일 토대  
재 편집 구성.



# 각 지방별 특구 지방세 혜택 2

추가제공된 한글파일 토대  
재 편집 구성.

각 지방별 특구 지방세 혜택  
3

추가제공된 한글파일 토대  
재 편집 구성.

# 기술출자방식(연구소기업)와 기술라이센스방식의 비교 - 표 디자인 추가.

| 구 분         |                | 기술출자 방식(연구소기업)   | 기술라이센스 계약 방식<br>(기술 실시권 허여)   |
|-------------|----------------|--|---|
| 개 념         |                | 기술(실시권 포함)을 직접 기업에 출자하고<br>지분으로 대가를 받는 방식  | 라이센스 계약을 통해 기업에게 기술의 실시<br>권을 부여하고, 대가로 현금 취득<br>*정액기술료와 경상기술료로 구성  |
| 기술이전<br>대가  |                | 배당금 및 지분 매각 대금<br>*기술의 미래가치에 투자개념  | 정액 및 경상기술료<br>* 정액기술료 : 정액으로 현금화하여 징수<br>경상기술료 : 매출액의 3%~5% 수준<br>선금 + 경상 : 일부를 현금, 일부는 경상<br>기술료로 징수   |
| 특<br>징      | 절차             | 기술의 가치평가, 사업성분석 등 보다 객관<br>적인 절차가 필요   | 기술도입 기업발굴 및 협상과정이 중요<br>* 기술이전 대가가 협상에 의해 결정됨   |
|             | 사업화            | 출자기관(공공연구기관)이 후속개발에 지속<br>적으로 직접 참여, 사업화기간의 단축과 높은<br>완성도 기대 가능  | 기술이전 이후의 사업화는 기업의 역량에<br>따라 차이가 큼   |
|             | 연구자            | 참여연구원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사업화<br>성공 시 획기적 인센티브 가능<br>*성공시 지분 매각에 따른 교수익 가능  | 연구원 인센티브는 실시계약에 따른 기술<br>료의 배분에 따름  |
|             | 기타             | 기업의 신사업부서의 Spin-Off 등 신규<br>창업효과와 고용효과 기대  | 기업의 제품성능개선, 지적권보호 등<br>다양한 전략에 활용가능   |
| 위<br>험<br>도 | 기업             | 지분제공 결정까지 사업성 등에 대한 신중<br>한 검토를 해야하는 등 사전투자 비용은 높음<br>기술을 지분으로 확보하여 사업화초기투자<br>비용에 대한 부담은 낮음   | 이전기술의 가격에 따라 기업의 부담이<br>차이가 있음<br>*이전가격 < 사업화 호의 -> 사업화 포기  |
|             | 공공<br>연구<br>기관 | 기술의 미래가치에 투자하는 형태이므로 사<br>업화 실패시 현금화 불가<br>하지만, 사업화 실패시 해당기술은 즉시 회<br>수되며, 추가 이전 가능<br>폐업 후 대표자 잠적 등 연락두절 시 회수의<br>어려움은 존재(출자시 조처필요) | 비교적 낮은 가격에 이전받은 기술이라면<br>반드시 사업화성공 해야하는 부담은 낮음<br><br>정액기술료로 계약체결시 이전 즉시 현금화<br>가 가능<br>경상기술료 계약시, 매출액을 추적하여 징<br>수해야하는 부담<br>이전기업이 사업화 포기시, 실시기간까지는<br>회수 불가 |

## 참고문헌 및 인용문서

이성상(2014), 연구자의 창업의지를 중심으로 살펴본 연구소기업 설립·운영의 효과, 벤처창업연구

Clarysse, B., Wright, M., Lockett, A., van de Velde, E. and Vohora, A.(2005), Spinning out new ventures: a typology of incubation strategies from European research institution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20 (2), 183-216

Klofsten, M. and Jones-Evans, D.(2000), Comparing Academic Entrepreneurship in Europe-The Case of Sweden and Ireland, *Small Business Economics*, 14(4), 299-309.

Bray, M. and Lee, J(2000), "University revenues from technology transfer: Licensing fees vs. equity position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5, pp. 385-392

---

본지에 실린 자료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허락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발행일** 2015년 7월 15일

**발행인** 김차동

**발행처**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함께 만든 이**

임창만(기획조정본부 본부장)

오영환(기획조정본부 사업총괄팀 팀장)

임문택(사업총괄팀 선임)

김인영(사업총괄팀 전임)

손민구(사업총괄팀 전임)

이상상(現 목원대 교수)

김형석(SCOOP 대표)

조수현(SCOOP 에디터)

**디자인·제작**

페이퍼디자인([www.paperdesign.kr](http://www.paperdesign.kr))

[www.innopolis.or.kr](http://www.innopolis.or.kr)



# 창조경제의 씨앗 연구소기업

연구소기업 설립 GUIDEBOOK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INNOPOLIS Foundation



305-340 |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123번길 27-5 (도룡동 4-27)  
[www.innopolis.or.kr](http://www.innopolis.or.kr)



---

---

---